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Subsidies in Goyang City

고양시 국·도비 보조사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세출결산 성질별 분류기준

박종혁
박지성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Subsidies in Goyang City

고양시 국·도비 보조사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세출결산 성질별 분류기준

연구책임자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지성(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부, 위촉연구위원)

발행일 2019년 11월 15일

저자 박종혁, 박지성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yri.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89636-41-8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6
제2장 국·도비 보조사업의 현황 및 선행연구	9
제1절 국·도비 보조사업 개요	11
제2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17
제3절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선행연구	27
제3장 고양시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35
제1절 고양시 국고보조금 현황	37
제2절 고양시 보조금 집행 현황	47
제4장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특성	67
제1절 보조금 세출예산 편성 및 통계목	69
제2절 고양시 보조금의 통계목별 분석	75
제3절 고양시 보조금의 분야 및 부문 분석	97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0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07
제2절 정책 제언	110
참고문헌	111
Abstract	113

표 목차

[표 1-1] 고양시의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현황('17~'19년 연평균)	4
[표 2-1] 보조사업 추진단계 및 담당부처	16
[표 2-2] 연도별 국고보조금 규모	18
[표 2-3] 부처별 국고보조금 현황(2019년)	18
[표 2-4] 분야별 내역사업 수와 비중(2019년)	20
[표 2-5] 분야별 보조사업 수와 비중(2019년)	20
[표 2-6] 분야별/지출목별 보조사업 예산액 및 비중(2019년)	22
[표 2-7] 연도별 경기도 도비보조금 현황(시비매칭 포함)	23
[표 2-8] 보조형태 도/시/군별 부담 현황	24
[표 2-9] 연도별 경기도 자치단체 보조 현황	26
[표 3-1] 고양시 부처별 국고보조금 연 금액(2017년~2019년)	37
[표 3-2] 고양시 부처별 국고보조금 사업 수(2017년~2019년)	39
[표 3-3] 고양시 국고보조금의 규모별 사업 수 및 비율	42
[표 3-4] 국고보조금 규모별 부처별 사업 수 및 비율	42
[표 3-5] 연도별 고양시 보건복지부 주요 국고보조금 및 매칭	44
[표 3-6] 고양시 주요 중앙부처 연도별 국고보조금 사업 수 및 금액	45
[표 3-7] 주요 중앙부처 국고보조금의 고양시 매칭비율별 사업 수	46
[표 3-8] 고양시의 중앙정부 부처 보조금 사업 수	47
[표 3-9] 고양시의 중앙정부 부처 보조금 사업비	48
[표 3-10] 연도별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 사업 수와 예산액	53
[표 3-11] 연도별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 수령액 및 집행률	54
[표 3-12] 고양시 보조금(기초연금)의 재원별 비율 : 3년간(2016~2018) 합계	55
[표 3-13] 연도별/부서별 보조금(기초연금) 사업비 규모와 비율	55
[표 3-14] 연도별/부서별 보조금(기초연금) 집행률	56
[표 3-15] 고양시 보조금(영유아보육료)의 재원별 비율 : 3년간(2016~2018) 합계	56

[표 3-16] 연도별 보조금(영유아보육료) 사업비 규모와 집행률	57
[표 3-17] 고양시 보조금(생계급여)의 자원별 비율 : 3년간(2016~2018) 합계	57
[표 3-18] 연도별/부서별 보조금(생계급여) 사업비 규모와 비율	58
[표 3-19] 연도별/부서별 보조금(생계급여) 집행률	58
[표 3-20] 고양시 보조금(가정양육수당)의 자원별 비율 : 3년간(2016~2018) 합계	59
[표 3-21] 연도별 보조금(양육수당) 사업비 규모와 집행률	59
[표 3-22] 고양시 보조금(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의 자원별 비율 : 3년간(2016~2018) 합계 ..	60
[표 3-23] 연도별/부서별 보조금(생계급여) 사업비 규모와 비율	60
[표 3-24] 연도별부서별 보조금(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집행률	61
[표 3-25] 고양시의 경기도 보조금 사업 수와 금액	62
[표 3-26] 연도별 고양시의 경기도 사회복지 보조금 사업수와 예산액	65
[표 3-27] 연도별 경기도 사회복지 보조금 수령액 및 집행률	66
[표 4-1] 지자체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표(분야부문)	69
[표 4-2] 지자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표(목그룹편성목통계목)	70
[표 4-3] 고양시 보조금 세출결산 주요 통계목 및 설정	74
[표 4-4] 연도별 고양시 세출예산과 보조금 예산(회계별)	75
[표 4-5] 연도별 고양시 보조금 사업비와 비율(자원별)	76
[표 4-6] 고양시 보조금의 통계목별 세부사업 건수와 비율	77
[표 4-7] 고양시 보조금의 통계목별 세부사업 금액과 비율	78
[표 4-8]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의 통계목별 세부사업 건수(비율)	81
[표 4-9]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의 통계목별 세부사업 금액(비율)	82
[표 4-10] 연도별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고양시의 보건복지부 보조금)	84
[표 4-11] 연도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집행(고양시의 보건복지부 보조금)	85
[표 4-12] 연도별 사회복지사업 보조 집행(고양시의 보건복지부 보조금)	86
[표 4-13] 연도별 의료 및 구료비 집행(고양시의 보건복지부 보조금)	86
[표 4-14] 경기도 보조금의 통계목별 세부사업 건수	87

[표 4-15] 경기도 보조금의 통계목별 세부사업 금액	89
[표 4-16] 연도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집행(고양시의 경기도 보조금)	91
[표 4-17] 연도별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92
[표 4-18] 연도별 사회복지사업 보조 집행(고양시의 경기도 보조금)	93
[표 4-19] 연도별 민간경상사업 보조 집행(고양시의 경기도 보조금)	93
[표 4-20] 연도별 사무관리비 보조 집행(고양시의 경기도 보조금)	94
[표 4-21] 연도별 시설비 집행(고양시의 경기도 보조금)	94
[표 4-22]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 집행의 주요 통계목별 추세	96
[표 4-23]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집행의 주요 통계목별 추세	96
[표 4-24] 분야별 고양시 보조금 사업 건수(비율)	97
[표 4-25] 부문별 고양시 보조금 사업 건수(비율) - 순위	98
[표 4-26] 분야별 고양시 보조금 사업 금액(비율)	99
[표 4-27] 부문별 고양시 보조금 사업 금액(비율)- 순위	100
[표 4-28] 고양시 보조금의 사회복지 분야 사업 건수	101
[표 4-29] 고양시 보조금의 사회복지 분야 사업 금액	101
[표 4-30] 고양시 보조금의 보건 분야 사업 건수	102
[표 4-31] 고양시 보조금의 보건 분야 사업 금액	102
[표 4-32] 고양시 보조금의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 건수	103
[표 4-33] 고양시 보조금의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 금액	103
[표 4-34] 고양시 보조금 세부사업 분류 검토(예시)	104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절차	7
[그림 2-1] 국고보조금의 분야별 내역사업과 보조사업 비교(2019년)	21
[그림 3-1] 고양시의 부처별 국고보조금(2017년~2019년)	38
[그림 3-2] 고양시의 부처별 국고보조금-사업 수(2017년~2019년)	40
[그림 3-3] 고양시 국고보조금 현황(금액과 사업 수)	41
[그림 3-4] 고양시 국고보조금 현황(금액과 사업 수) - 보건복지부 제외	41
[그림 3-5] 연도별 고양시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현황	43
[그림 3-6] 연도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시비 금액 및 비율	44
[그림 3-7] 고양시 중앙부처 보조금 사업 수와 금액 비교	50
[그림 3-8] 고양시의 중앙부처 사업비 규모별 사업 수(비율)	51
[그림 3-9] 고양시의 주요 중앙부처 보조금 사업 규모별 사업 수	52
[그림 3-10]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 사업 규모별 사업 수(비율)	54
[그림 3-11]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사업의 금액 규모별 사업 수	63
[그림 3-12]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사업 수와 금액 비교	64
[그림 3-13]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사업 주요 4개 분야의 금액 규모별 사업 수	65
[그림 4-1] 고양시 보조금의 통계목별 세부사업 비율(건수와 금액)	80
[그림 4-2]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의 통계목별 세부사업 비율(건수와 금액)	83
[그림 4-3]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의 통계목별 세부사업 비율(건수와 금액)	90

요 약

1.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재정적 연계성이 확대됨

- 최근 수년 동안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증가하면서 광역-기초 간 재정적 연계성이 확대되었음.
- 고양시의 최근 3년간의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수로 연평균 568.7건, 사업비는 연평균 약 6,823억원으로 나타남.

○ 국·도비 보조사업 수행에서의 재정적, 인력 제약이 발생하거나 증가함

- 열악한 재정 수준과 사업수행 인력이 부족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됨.

○ 고양시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함

- 기초자치단체의 국·도비 보조사업 수행의 어려움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고양시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고양시 국·도비 보조금의 통계목별 세부사업을 주요 부처 중심으로 분석하여 고양시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임.

□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 제시함

- “고양시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어떠한가?”, “고양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가?”, “고양시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임.

- 연구 질문에 근거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

○ 연구는 다음과 같은 5단계 과정을 따라 수행됨

- ①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② 국·도비 보조사업의 운용현황을 분석하고, ③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출예산을 성질, 특성별로 분류하고, ④ 성질별로 분류한 결과와 함께, 세출예산 목별 특성, 관리특성 마지막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함.
- 국·도비 보조사업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문헌고찰, 현황분석,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함.

2. 국·도비 보조사업의 현황 및 선행연구

□ 국·도비 보조사업의 개요

○ 국·도비 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을 장려 및 지원을 위해 교부함

- 국·도비 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한 사업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교부함.

□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 2019년 기준, 국내 국·도비 보조금 규모는 77.8조원이며,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은 보조금 예산을 지출함

- 2019년 기준, 국내 전체 국·도비 보조금 규모는 77.8조원으로 전체 국가예산인 469.4조원 중 16.5%를 차지함.
- 반면, 내역사업 수는 2019년 기준으로 4,629건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의 내역사업이 1,119건(24.1%)으로 가장 많음.
- 그리고 보조사업 수는 2019년 기준으로 218,218건이며,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사업이 57,134건(26.1%)으로 가장 많음.

□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선행연구

○ 국·도비 보조금 관련된 국내 연구는 주로 보조금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도비 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보조율에 관한 연구 등임

- 우리나라에 국·도비 보조금에 관한 연구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보조금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국·도비 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주만수(2000), 김재훈(2003), 장덕희(2009), 김충목·강민규(2009), 김상철·김대철(2010), 임성일(2012) 등이 있음.
- 국·도비 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는 국·도비 보조사업 사후평가, 사전평가에 대한 논의를 찾아볼 수 있으며, 김정훈(2013), 김정훈·공동성(2013), 오윤수·홍수완(2015), 오윤수·홍수완(2015) 등이 있음.
- 보조율에 관한 연구에서는 보조율 실태를 확인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들을 제시하는 연구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이창균(2001), 유영성·이원희(2005), 권오성(2006), 최병호·정종필(2007), 조임곤(2009) 등이 있음.

3. 고양시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

□ 고양시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 고양시는 20개의 중앙부처로부터 최근 3년간 2조 46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음

- 최근 3년간 2조 468억원, 1,696건의 사업을 지원받았음. 사업 1건 당 평균 12.1억원 수준의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중 보건복지부의 국·도비 보조금이 1조 6,221억원(전체의 79.2%), 792건(전체의 46.70%)임.
- 규모별로 국·도비 보조금 건수를 살펴보면, 1천만원에서 1억원 규모의 국·도비 보조금 사업 건수가 589건(34.7%)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에서 10

억 원 규모의 국·도비 보조금 사업 건수가 560건(33.0%)임.

- 특히,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국·도비 보조금 사업 건수가 358건(21.1%)이고 전체적으로 10억원 이하의 국·도비 보조금 사업 건수가 전체 사업 건수의 88.9%를 차지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성가족부의 국·도비 보조금이 소액사업이 많음.

○ **고양시는 보건복지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연도별 사업 건수와 금액이 매년 크게 증가함**

- 보건복지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매칭율은 매년 28%선을 유지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대부분 기초연금 지급,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육아수당 지원 등임.

□ **고양시 국·도비 보조금 집행 분석**

○ **고양시 국·도비 보조금 집행의 분야별 사업 건수는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순이고, 분야별 금액은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산업·중소기업 순임**

-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기도 보조금의 재원별 비율은 도비, 시비가 각각 43.0%, 57.0%이지만, 대체적으로 도비의 비율은 감소하고 시비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임.
- 고양시 보건복지부 국·도비 보조금 중 핵심 사업은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생계급여,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임.
- 이러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는 본청 아동청소년과, 구청 가정복지과와 시민복지과, 보건소에 한정되어 있음.

○ **고양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집행률은 약 99%를 상회할 만큼 높았지만, 일부 부서의 집행률은 그렇지 못함**

- 같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도 부서에 따라 집행률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소액 사업비를 지출하는 부서에서 집행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4. 고양시 보조금의 집행 특성 분석

□ 고양시 보조금 사업의 회계별 구분

○ 고양시 보조금 예산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일반회계로 집행되고 있음

- 고양시 보조금 사업비의 재원은 국비, 시비, 도비 순이며, 국비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음.

□ 고양시 보조금 집행의 통계목별 분석

- 고양시 보조금의 세부사업을 통계목으로 분석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시설비, 사회복지사업보조, 의료 및 구료비임.

□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 집행의 통계목별 분석

○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의 세부사업을 건수와 금액으로 비교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의료 및 구료비가 대표적임

-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규모와 시비 비중이 모두 매년 크게 증가함.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시비 비중은 감소함.
-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대한 시비 비중은 매년 감소함.
- 의료 및 구료비는 매년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비는 감소함.

□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집행의 통계목별 분석

○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의 세부사업을 건수와 금액으로 비교하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 시설비가 대표적임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매년 크게 증가하며 시비의 부담률도 매우 높음.
-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매년 금액이 증가하고 시비의 비중이 낮아짐.

-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매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함.
- 사무관리비는 매년 금액이 증가하고 시비의 비중이 낮아짐.
- 시설비는 매년 크게 증가함.

□ 고양시 보조금의 분야 및 부문별 집행 분석

- 고양시 보조금을 분야별로 분석하면, 사업 건수 기준으로 사회복지 분야, 보건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금액기준으로 사회복지 분야, 보건 분야,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절대다수를 차지함.
- 고양시 보조금을 부문별로 분석하면, 사업 건수기준으로 보건의료 부문,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농업·농촌 부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금액 기준으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노인·청소년 부문, 기초생활보장 부문이 절대다수를 차지함.

5. 정책 제언

□ 고양시 국고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 필요

- 보조금의 효율화를 위하여 보조금 사업건수와 금액에서 중요도가 높은 지출 내역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
- 유사 또는 중복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통합을 건의해야함.
- 보조금 사업에서 고양시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 보조금 관리의 오류를 수정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수년간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 간의 재정적 연계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특히, 중앙정부 입장에서 국민생활 환경기준(National Minimum), 국정과제 등의 명목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반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열악한 재정적 수준과 제한된 인력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17~19년) 간 고양시의 국고보조금 사업수는 평균 568.7건이고, 사업비는 연평균 약 6,823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양시의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총괄 현황을 살펴 보면(17~19년 연평균 현황), 전체 사업수 대비 46.7%, 연평균 약 265.7건, 전체 사업비 대비 79.25%인 연평균 약 5,407억원이 보건복지부의 보조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년 시민복지국 정책사업의 단위사업수는 29건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액은 1,788억원이다.¹⁾ 전반적으로 고양시의 국고보조사업은 사업수나 사업비 측면에서 대단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관한 연구를 시행한 경우가 없으며, 대부분 중앙정부차원에서 보조율 보조사업 관리 및 운용,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의 이슈에 대한 연구만 진행되어 왔다.

또한 고양시 입장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앙정부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고양시의 재정과 인력 또한 투입된다는 측면에서는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¹⁾ 일반+특별회계이며, '2019년 고양시 지방재정공시(2019 회계연도 예산 기준)'의 내용임.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역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만 혜택은 늘리고, 제약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8 회계연도에 집행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세출예산의 성질·특성별 분석을 통하여 고양시 보조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 1-1] 고양시의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현황(17~19년 연평균)

순번	사업수			사업비		
	부처명	사업수(건)	비율(%)	부처명	금액(천원)	비율(%)
1	보건복지부	265.7	46.7%	보건복지부	540,684,319	79.25%
2	농림축산식품부	47.7	8.4%	환경부	52,427,551	7.68%
3	국토교통부	43.7	7.7%	여성가족부	37,428,203	5.49%
4	여성가족부	42.0	7.4%	문화재청	17,805,695	2.61%
5	환경부	28.3	5.0%	행정안전부	8,841,726	1.30%
6	산림청	26.0	4.6%	고용노동부	7,519,296	1.10%
7	농촌진흥청	24.3	4.3%	국토교통부	7,345,496	1.08%
8	문화체육관광부	20.0	3.5%	농촌진흥청	1,970,189	0.29%
9	행정안전부	19.0	3.3%	기획재정부	1,697,541	0.25%
10	기획재정부	13.7	2.4%	문화체육관광부	1,649,491	0.24%
11	문화재청	9.0	1.6%	산림청	1,147,561	0.17%
12	식품의약품안전처	8.3	1.5%	식품의약품안전처	1,039,791	0.15%
13	고용노동부	7.0	1.2%	농림축산식품부	828,246	0.12%
14	산업통상자원부	6.7	1.2%	산업통상자원부	636,812	0.09%
15	법무부	2.7	0.5%	법무부	590,132	0.09%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18,441	0.05%
17	외교부	1.0	0.2%	교육부	168,164	0.02%
18	중소벤처기업부	1.0	0.2%	통일부	97,667	0.01%
19	통일부	1.0	0.2%	중소벤처기업부	74,800	0.01%
20	교육부	0.7	0.1%	외교부	3,967	0.00%
	합계	568.7	100.0%	합계	682,275,087	100.00%

출처 : e-나라도움(<https://opn.gosims.go.kr>) 접속일 2019.10.14.

2. 연구의 질문

본 연구의 주요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고양시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어떠한가?”, “고양시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은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가”, “고양시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고양시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이다.

이상의 연구질문에 대하여 본 연구는 연도별 세출예산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조사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고양시에 적합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첫째, 유형별 국·도비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세부사업에 관한 질적분석을 시도한다. 둘째, '16~'18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을 타 지자체와 비교·분석한다.

종합적으로, 분석기간을 특정년도에 한정하는 대신에 단년도 사업뿐만 아니라, 3년간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을 시도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국·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운용현황을 분석한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현황에서는 보조사업의 추이, 보조사업 현황 및 보조사업 유형을 분리한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출예산을 성질 및 특성별로 분류한다. 성질별 분류 개요를 설명하고, 세출예산 목별 특징, 관리 특성 및 타 지자체 국·도비 보조사업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효율적인 고양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방법론을 사용한다. 문헌고찰, 현황분석,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 등의 방법론을 토대로 연구하며, 세출예산 자료를 근거로 사업 대비 예산액, 단위사업의 성격 등을 분석한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기초자료는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를 위해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제언을 위해 전문가의 인터뷰 및 자문을 활용한다.

[그림 1-1] 연구절차

연구절차	주요내용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 관련 선행연구 검토	연구의 목적, 필요성 기술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구체화 ↓ 국·도비 보조사업 개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보조금 사업 관련 선행연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자료 검토 • 관련 선행연구 분석 • 관련 정책 분석
3. 고양시 국고보조금 및 보조금 집행 현황	고양시 국고보조금 현황 고양시 보조금 집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자료 검토
4. 고양시 보조금 집행 특성 분석	고양시 보조금의 통계목별 분석 보건복지부 보조금 집행 특성분석 경기도 보조금 집행 특성 분석 분야 및 부문별 보조금 집행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분석 • 고양시 세출 자료 참고
5. 결과 분석 및 정책제언	정책방향, 방안 제시 연구의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 • 심층 면담
6. 최종보고서 작성	연구보고서 수정, 보완, 작성완료	-

제 2 장

국·도비 보조사업의 현황 및 선행연구

제1절 국·도비 보조사업 개요

제2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제3절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선행연구

제절 국·도비 보조사업 개요

1. 보조금의 개념 및 성격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²⁾이라고 정의한다²⁾.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정한 사업을 하도록 장려하거나 그들의 사업에 대한 재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조금법」에서는 재정지원의 유형을 보조금, 부담금, 급부금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 또는 조장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부담금은 법령이 정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급부금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소득보조금을 의미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3가지 유형의 보조금이 정확히 구분되어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재원의 출처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나오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정부로부터 나오는 지방보조금으로 부른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재정 관련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지방재정법」에서 부담금과 교부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21조 제1항에서 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한다.’라고 규정³⁾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교부금

²⁾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³⁾ 지방재정법 제21조 1항

을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은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중에서 국가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교부금은 국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위임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경비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 의하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재정적 연계성을 권장하도록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⁴⁾

4) 지방재정법 제23조 1항 및 2항

2. 보조금의 기능

1) 국고보조금의 기능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국고보조금의 가장 중요한 순기능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의무교육, 사회보장 등 국민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되는 행정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국가의 이러한 의무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국가의 산업 발전,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을 위해 범국가적 정책을 추진할 때, 별도의 중앙정부가 행정조직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지방자치단체 조직에게 국고보조금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권장·조장할 수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수행할 때 국고보조금으로서 통제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국고보조금은 역기능도 존재한다. 첫째로, 국고보조금이 조건부 교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재정운동을 저해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재원의 중앙정부 의존성이 심화될 수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국고보조금을 통한 재정보호가 절실하기 때문에 지나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긴급히 실시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을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적정 시기에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여 투자의 비효율성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며, 반대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주어지게 되면, 해당 사업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당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끈끈이 효과’로 인해 지방재정이 필요 이상으로 팽창하고 방만한 재정운영 관행이 나타날 수 있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지방비 부담은 지방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에서 부과되는 의무적 지방비 부담은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게 된다.

2) 지방보조금의 기능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주요한 기능은 시·군의 최저수준 서비스공급, 지역 간 재정격차의 완화, 외부성 시정, 특정서비스 공급 장려 등이다.

첫째, 시·군은 지방보조금을 통해 최저수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재정력이 열악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재원 만으로는 주민의 최저 욕구 충족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 간의 재정력 격차는 주민의 사회적 후생의 불균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 및 쇠퇴지역의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을 활용해서 징수된 재원 중 초과되는 재원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전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특정 서비스가 최저공급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지방보조금은 유출효과를 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때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서비스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외부효과를 보조금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은 피구(A. Pigou)의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하는 공공재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하여 비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경우에 상위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는 피구적 보조금에 해당되는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효율적 수준의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처럼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시정,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가치재의 생산 및 소비 장려, 특정서비스의 공급 장려, 지역경제의 안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부 목적을 찾을 수 있다.

셋째, 지방보조금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역할 분담방식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보조금을 통한 재정지원을 하고, 공공서비스의 실제공급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게 된다. 기초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선호나 요구를 광역자치단체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된다. 즉, 기초자치단체에 공공서비스를 위임하여 공급하게 되면 주민들의 선호나 요구에 따라 지역정부간의 경쟁적 공급이 가능해진다는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보다 여

러 기초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경쟁적 조건에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의미이다.

3) 보조사업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에서 전국적 편익과 관련이 깊거나 국가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무에 대해서 정부가 그 경비를 일부 부담할 때가 있고, 보조금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행되는 사업을 모두 보조 사업이라고 부를 수 있다.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강제성 여부로 구분한다면, 법령이나 제도로써 강제성이 있는 의무적 보조금(mandatory grants)에 의한 보조사업과 강제성이 없는 선택적 내지 임의적 보조금(discretionary grants)에 의한 보조사업이 있다. 대체적으로 국고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의 차이를 조정하기 보다는 특정사업에 집중하여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고보조사업은 지역 간의 재정력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조사업은 「보조금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 등)는 매년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 계상을 신청해야한다. 다만, 국가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국가는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예산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시책 상 부득이한 경우,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그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 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⁵⁾

5) 보조금법 제3조

[표 2-1] 보조사업 추진단계 및 담당부처

NO.	보조사업 추진단계	담당부처
1	신규 및 계속 사업계획서 제출	중앙행정관서 → 기획재정부
2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중앙행정관서
3	신청지시	중앙행정관서 → 지방자치단체
4	신청 및 보고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관서
5	예산요구서 제출	중앙행정관서 → 기획재정부
6	지방비 부담협의	중앙행정관서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7	보조금 예산의 확정	기획재정부 및 국회
8	예산 통지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9	사전 준비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관서
10	보조금 교부	기획재정부 → 중앙행정관서 → 지방자치단체
11	보조금 집행	지방자치단체
12	사업실적 보고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관서 → 기획재정부

출처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사업 업무매뉴얼』, 기획재정부, 2016.

한편,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및 예산 운영의 주요 기관은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과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보조 사업의 보조금을 교부한 기획재정부와 중앙 행정관서, 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사업실적 보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법」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 행정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⁶⁾ 특히, 집행된 보조금에 대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6조의3에 의하면, 보조금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정산 보고서 등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도록 되어있다.⁷⁾

6) 보조금법 제26조의 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는 2011년 7월 신설되었으며, 2017년 1월 제목개정이 이루어짐.

7) 보조금법 제26조 3항

제2절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1. 국고보조사업의 현황

1) 국고보조금 규모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2015년 58.3조원에서 2019년 77.8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총지출대비 국고보조금 지출의 비율도 2015년 15.5%에서 2019년 16.5%로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은 지원 대상에 따라 ‘자치단체 보조’와 ‘민간보조’로 구분하며, 2019년 국고보조금 총액을 자치단체 보조와 민간보조로 나누면 각각 58.8조 원(75.5%)과 민간보조 19.1조 원(24.5%)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자치단체 보조로 집행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통제가 가능한 자치단체 보조에 비하여 민간보조는 비록 전체 국고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일단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민간보조사업자들이 기득권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국가재정 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축소 및 폐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민간보조가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⁸⁾ 최근 국고보조금 규모를 분석하면, 2017년 일시적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의 증가세는 국가의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인 4.8%보다 높은 것이다. 국고보조금이 특정사업을 위한 지출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가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⁹⁾ 또한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와의 매칭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것도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되고 있다.

8) 기획재정부(2018). 2018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9) 류민정(2015). “지방재정압박의 원인과 개선과제: 정부간 재정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0권 제1호

[표 2-2] 연도별 국고보조금 규모

(단위 : 조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고보조금 지출(a)(조원)	58.3	62.3	59.6	66.9	77.8
자치단체 보조(조원)	45.1	47.5	46.4	50.2	58.8
민간 보조(조원)	13.2	14.8	13.2	16.7	19.1
정부 총지출(b)(조원)	375.4	386.4	400.0	428.7	469.4
총지출 대비 보조금 지출(a/b)(%)	15.5	15.6	14.9	15.6	16.5

출처 : e-나라도움(<https://opn.gosims.go.kr>) 접속일 2019.10.14.

2) 부처별 국고보조금 현황

우리나라는 총 41개 중앙정부 부처에서 국고보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보건복지부가 37.1조 원(47.7%)으로 가장 많은 국고보조금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가 6.8조 원(8.7%), 고용노동부 6.3조 원(8.2%), 국토교통부 6.3조 원(8.2%)의 순으로 국고보조금 예산이 배분되고 있다. 2019년 국고보조금 예산액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41개의 중앙정부 부처 중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처 중에서도 11개 부처만이 전체 국고보조금 예산액 대비 부처 국고보조금 예산액 1.0%를 초과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부처의 국고보조금 예산액은 전체 국고보조금 예산액의 1.0%도 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은 예산의 측면에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특정 부처에 집중되었고, 소수의 부처 국고보조금에 대한 효율적 운용이 곧바로 전체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3] 부처별 국고보조금 현황(2019년)

(단위 : 억원, %)

중앙부처	예산액(억원)	비중(%)	중앙부처	예산액(억원)	비중(%)
총계	778,962	100.0	국방부	1,258	0.1
보건복지부	371,693	47.7	식품의약품안전처	1,003	0.1
농림축산식품부	68,199	8.7	외교부	830	0.1
고용노동부	63,945	8.2	특허청	708	0.0
국토교통부	63,906	8.2	경찰청	701	0.0

중앙부처	예산액(억원)	비중(%)	중앙부처	예산액(억원)	비중(%)
환경부	47,026	6.0	소방청	491	0.0
문화체육관광부	38,100	4.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49	0.0
산업통상자원부	23,824	3.0	대법원	302	0.0
행정안전부	16,177	2.0	방송통신위원회	166	0.0
중소벤처기업부	12,963	1.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16	0.0
해양수산부	12,867	1.6	국회	97	0.0
산림청	10,755	1.3	금융위원회	90	0.0
여성가족부	9,379	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82	0.0
통일부	7,742	0.9	국세청	40	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458	0.9	방위사업청	25	0.0
문화재청	5,136	0.6	해양경찰청	16	0.0
기획재정부	4,348	0.5	공정거래위원회	13	0.0
교육부	3,771	0.4	새만금개발청	11	0.0
농촌진흥청	1,886	0.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	0.0
법무부	1,720	0.2	국가인권위원회	2	0.0
국가보훈처	1,660	0.2	국민권익위원회	1	0.0

출처 : e-나라도움(<https://opn.gosims.go.kr>) 접속일 2019.10.14.

3) 국고보조금의 분야별 내역사업¹⁰⁾ 수와 보조사업¹¹⁾ 수 현황

2019년 국고보조금을 내역사업으로 구분하면, 총 4,629건의 내역사업이 있고, 내역사업을 분야별로 분석하면, 문화 및 관광분야 내역사업이 1,119건(24.1%)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수산 분야 내역사업이 952건(20.5%), 사회복지 분야 내역사업이 659건(14.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10건(8.8%) 순으로 나타났다.

10) 내역사업 : 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서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른 예산의 통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단위를 의미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조).

11) 보조사업 :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함(보조금법 제2조).

[표 2-4] 분야별 내역사업 수와 비중(2019년)

(단위 : 건, %)

분야	내역사업 수	비중
문화 및 관광	1,119	24.1
농림수산	952	20.5
사회복지	659	14.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10	8.8
보건	323	6.9
교통 및 물류	300	6.4
환경	262	5.6
일반·지방행정	157	3.3
국토 및 지역개발	107	2.3
공공질서 및 안전	96	2.0
통신	81	1.7
교육	76	1.6
통일·외교	45	0.9
과학기술	28	0.6
국방	14	0.3
합계	4,629	100.0

출처 : e-나라도움(<https://opn.gosims.go.kr>) 접속일 2019.10.14.

한편, 2019년 국고보조금의 보조사업 수는 총 218,218건이며, 분야별 보조사업 수는 사회복지 분야가 57,134건(26.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수산 분야 55,622건(25.4%), 문화 및 관광 분야 39,808건(18.2%), 보건 분야 26,762건(12.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5] 분야별 보조사업 수와 비중(2019년)

(단위 : 건, %)

분야	보조사업 수	비중
사회복지	57,134	26.1
농림수산	55,622	25.4
문화 및 관광	39,808	18.2
보건	26,762	12.2
환경	10,912	5.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872	4.5
공공질서및안전	4,227	1.9
교통및물류	3,451	1.5
국토및지역개발	3,065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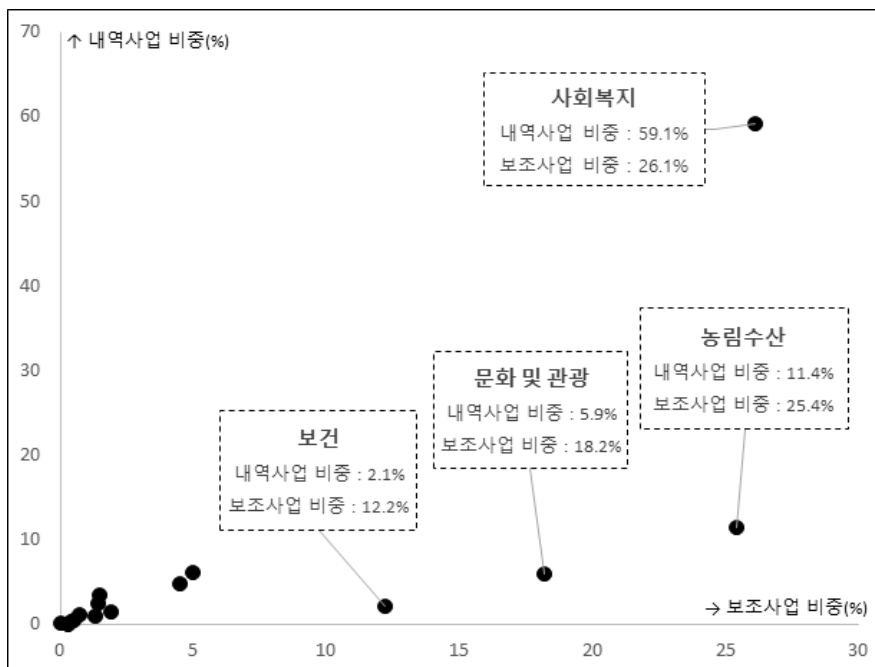
분야	보조사업 수	비중
일반·지방행정	2,884	1.3
통일·외교	1,596	0.7
통신	1,251	0.5
교육	909	0.4
과학기술	678	0.3
국방	47	0.0
합계	218,218	100.0

출처 : e-나라도움(<https://opn.gosims.go.kr>) 접속일 2019.10.14.

2019년 국고보조금의 내역사업 비중과 보조사업 비중을 분야별로 비교하면,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 및 관광, 보건 등 4개 분야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1] 국고보조금의 분야별 내역사업과 보조사업 비교(2019년)

(단위 : %)



출처 : e-나라도움(<https://opn.gosims.go.kr>) 접속일 2019.10.14.

주) 내역사업 비중 = (분야 내역사업 수 / 전체 내역사업 수)

보조사업 비중 = (분야 보조사업 수 / 전체 보조사업 수)

4) 국고보조금의 지출목별 현황

2019년 국고보조금을 지출목인 자치단체 이전과 민간이전으로 구분하면, 자치단체 이전은 사회복지 분야에 39.1조 원(65.5%)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다. 다음으로 농림수산 분야에 6.1조 원(10.5%), 환경 4.6조 원(7.9%)의 순으로 예산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민간이전은 사회복지 분야에 6.9조 원(36.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9조 원(15.1%), 농림수산 분야에 2.8조 원(14.7%) 순으로 예산액이 지출되고 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자치단체 이전과 민간이전의 분야별 지출 비중은 유사하지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민간이전 비중이 자치단체 이전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분야별/지출목별 보조사업 예산액 및 비중(2019년)

(단위 : 억원, %)

NO.	자치단체 이전			민간이전		
	분야	예산액	비중	분야	예산액	비중
1	사회복지	391,117	66.5	사회복지	69,856	36.7
2	농림수산	61,508	10.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8,842	15.1
3	환경	46,300	7.9	농림수산	28,039	14.7
4	문화및관광	22,076	3.8	문화및관광	24,428	12.8
5	국토및지역개발	18,498	3.1	교통및물류	13,428	7.1
6	교통및물류	13,453	2.3	통일·외교	8,521	4.5
7	보건	11,437	1.9	보건	5,098	2.7
8	공공질서및안전	8,871	1.5	통신	3,838	2.0
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7,916	1.4	공공질서및안전	2,276	1.2
10	일반·지방행정	6,497	1.1	교육	2,239	1.2
11	국방	233	0.0	일반·지방행정	1,303	0.7
12	교육	221	0.0	국방	1,051	0.6
13	과학기술	182	0.0	환경	1,038	0.5
14	통일·외교	134	0.0	국토및지역개발	302	0.2
15	-	-	-	과학기술	275	0.1
	합계	588,444	100	합계	190,539	100

출처 : e-나라도움(<https://opn.gosims.go.kr>) 접속일 2019.10.14.

2. 경기도 지방보조사업 현황²⁾

1) 경기도 도비보조금 규모

경기도 도비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23조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 제2항³⁾에 제시되어 있다. 경기도 전체를 볼 때, 본예산 2019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은 총 1,193개 사업, 2조 620억원 규모이다. 경기도의 지방보조금은 자치단체 보조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2-기 연도별 경기도 도비보조금 현황(사비매칭 포함)]

(단위 : 건, 억 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사업수	건수	751	786	878	
	증감	-	(4.6)	(11.7)	(8.2)
도비보조금 총액	금액	21,908	24,546	28,278	
	증감	-	(12.0)	(15.2)	(13.6)
도비	금액	11,424	12,641	13,687	
	증감	-	(10.7)	(8.3)	(9.5)
시군비	금액	10,484	11,905	14,591	
	증감	-	(13.6)	(22.6)	(18.1)

출처 : 경기도의회, 『경기도 도비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보조율 제도 개선방안』, 경기도의회, 2019.

위의 표를 살펴보면, 경기도 도비 보조금 규모(시군 매칭액 포함)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사업 수는 2016년 751개에서 2018년에 878개로 연평균 8.2% 증가하였다. 사업규모는 2016년 총 2조 1,908억 원에서 2018년 2조 8,278억 원으로 연평균 13.6%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도비보조금 총액 중 도비는 2016년 1조 1,424억 원에서 2018년 1조 3,687억 원으로 연평균 9.5% 증가하였다. 시군비는 2016년 1조 484억 원에서

12) 경기도의회(2019). 『경기도 도비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보조율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름.

13)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조 제2항 : 지방보조금이란 경기도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사책 상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함.

2018년 1조 4,591억 원으로 연평균 18.1% 증가하였다.

한편,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도와 시군별의 매칭 부담 비율은 도가 48.4%, 시군이 5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와 시군비의 부담률은 매년 등감의 차이가 있으나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도비의 부담액이 감소되는 반면, 시군비의 부담액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도비 비율은 52.1%에서 2018년에 48.4%로 감소되지만, 시군비 부담률은 2016년에 47.9%에서 2018년 51.6%로 증가하였다.

[표 2-8] 보조형태 도/시/군별 부담 현황

(단위 : %)

구분	기준보조		차등보조	
	도비비율(%)	시군비비율(%)	도비비율(%)	시군비비율(%)
합계	34	66	25	75
성남시	27	73	10	90
용인시	32	68	10	90
수원시	30	70	10	90
화성시	32	68	10	90
하남시	35	65	10	90
고양시	30	70	10	90
안산시	32	68	20	80
시흥시	33	67	20	80
김포시	35	65	20	80
의왕시	27	73	20	80
평택시	29	71	20	80
군포시	31	69	20	80
부천시	30	70	30	70
파주시	33	67	30	70
광주시	31	69	30	70
안양시	32	68	30	70
광명시	31	69	30	70
구리시	32	68	30	70
과천시	34	66	30	70
남양주시	37	63	40	60
이천시	30	70	40	60
의정부시	32	68	40	60
오산시	31	69	40	60
양주시	33	67	40	60
안성시	34	66	40	60
가평군	47	53	40	60
동두천시	47	53	50	50

구분	기준보조		차등보조	
	도비비율(%)	시군비비율(%)	도비비율(%)	시군비비율(%)
포천시	40	60	50	50
여주시	44	56	49	51
양평군	38	62	50	50
연천군	54	46	50	50

출처 : 경기도의회, 『경기도 도비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보조율 제도 개선방안』, 경기도의회, 2019, p. 66.

주 1. 2018년 12월 현재 실 집행에 따른 자료로 예산서상의 자료와 미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2. 이하 각 시군별 보조액 및 보조율 분석시에는 수치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 집행을 기준으로 분석함.

2) 경기도 도비보조금의 자치단체 보조

경기도 도비보조금의 기초자치단체 보조를 경상과 자본으로 구분해 비교하면 최근 3년 동안 보조사업 수는 자본보조가 경상보조에 비해 증가량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보조금액은 경상보조가 자본보조에 비해 증가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비보조금 사업 수 기준 기초자치단체 경상보조는 2016년 523건에서 2018년 605건으로 3년간 연평균 7.6% 증가하였고, 기초자치단체 자본보조는 2016년 228건에서 2018년 273건으로 3년간 연평균 9.6% 증가하였으며, 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는 2016년 8,931억 원에서 2018년 1조 764억 원으로 3년 연평균 9.8% 증가하였고, 기초자치단체 자본보조는 2016년 2,493억 원에서 2018년 2,923억 원으로 3년 평균 8.4% 증가하였다. 그리고 경상보조와 자본보조의 연도별 비중을 살펴보면 매년 약간의 있으나, 3년 평균 기초자치단체 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각각 78.2%와 2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을 기준으로 경상보조가 78.6%, 자본보조가 21.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9] 연도별 경기도 자치단체 보조 현황

(단위 : 건, 억 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합계	751	11,424	100	786	12,641	100	878	13,687	100
자치단체 경상보조	523	8,931	78.2	550	9,821	77.7	605	10,764	78.6
자치단체 자본보조	228	2,493	21.8	236	2,820	22.3	273	2,923	21.4

출처 : 경기도의회, 『경기도 도비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보조율 제도 개선방안』, 경기도의회, 2019, p. 58.

위의 표에서 기초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비해 그 비중이 큰 것은 도비보조금이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특수성 때문이라고 예상된다. 즉,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무 중 도가 장려·권장하거나 도의 정책목표 상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또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부담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경상적으로 이전시켜주는 경비를 말한다. 따라서 경기도의 경우, 31개 시·군이 경기도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기제로 도비보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제3절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 선행연구

국고보조금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는 보조금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고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보조율에 관한 연구 등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 이러한 유형에 따라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조금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국내에서 보조금 제도에 관련된 연구로는 주로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국고보조금의 성격과 존재이유에 대하여 논의하였던 남홍우(1957) 이후 수없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측면에서 본다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각이 중앙집권 시대와 지방자치 시대에서 의미하는 것이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0년대 중반 이후 국고보조금을 직접적인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고보조금 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한 전문가는 주만수(2000), 김재훈(2003), 장덕희(2009), 김충목·강민규(2009), 김상철·김대철(2010), 임성일(2012) 등이 있다.

첫째, 주만수(2000)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최종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시각에서 국고보조금의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당시 208개 지자체에 대해 설문조사한 내용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양여사업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정책목표가 유사한 국고보조사업들 혹은 단일사업이지만 예산편성이 세부사업별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목표를 가지는 사업에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경우에 주관부처를 일원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보조금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 최소 규모를 지자체에 적용하는 규모로 상향조정하고, 신청에 있어서 주관부처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단일화하며, 보조금 내시 및 교부과정에 있어서 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추가 고려가 필요하고,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중앙부서에 귀속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김재훈(2003)의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정책 유형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이 어떠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으며 바람직한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분석대상 사업은 건설교통부의 26개 사업, 보건복지부의 97개 재분배 정책 그리고 환경부의 22개 규제정책 등 특징적인 정책유형에 해당하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고보조금이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보조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규제정책이 가장 낮은 보조율을 보였으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단체장의 지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개발정책과 규제정책의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치사무일 경우 더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덕희(2009)는 국고보조금의 이월현상을 실증분석 하였다. 이월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보조금의 배분주체가 지자체에 비해 보조사업의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얻지 못 하는 데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지자체의 이월금을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으로 구분하고, 국고보조금이 이월금 발생을 유도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와 군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이월금 발생을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월금의 발생은 지자체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동의 결과이지만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초래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정부 간의 정보비대칭성의 문제를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보조금 지원주체가 적정한 보조사업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보조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도 제안하였다.

넷째, 김충목·강민규(2009)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지방비 부담을 높이고,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할 때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추진이 아닌 지자체 중심의 자율적인 판단과 책임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의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집행과 통제, 심의를 위한 일원화된 행정시스템의 구축 혹은 법령상 명시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기존의 관행으로 굳어진 현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청사진을 토대로 단계적인 변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김상철·김대철(2010)에서는 참여정부 이후 서울시의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지방복지재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시 복지분야의 국고보조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저출산·고령화, 소득양극화 등에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따른 대규모 복지분야 국고보조 사업이 서울시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체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한 채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고보조 사업의 차등보조율 설정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 산정식의 개선 및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운영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고, 기존의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이양사업의 대안으로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임성일(2012)은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고보조금의 주요한 문제점은 대상사업의 선정원칙 결여, 기준보조율과 지방비 부담 설정의 불합리성, 자금의 불안정성과 낮은 예측 가능성, 소액·유사사업 과다,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부족, 사업성과 관리 미비 등을 제기하였고, 이들 문제점들을 국고보조금 제도의 대상사업을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정형화하고, 기준보조율 체계의 단순화 및 보조사업의 유형화를 통해 지방비 부담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며, ‘국고보조금위원회’(가칭)의 설치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대화와 협력적 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으로 제안하였다.

2. 국고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국고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는 크게 국고보조사업 사후평가에 관한 내용과 사전 평가에 관한 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사후평가 격인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는 2011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해 도입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사후평가에 관한 연구는 김정훈(2013), 김정훈·공동성(2013), 오윤수·홍수완(2015) 등이 있으며, 사후평가에 관한 연구는 오윤수·홍수완(2015)에서 일부 존재하고 있다.

첫째, 김정훈(2013)은 보조사업 평가제도의 발전방안으로 보조금 관련 법제도의 정비, 보조사업 운용평가의 정립, 보조사업 운용평가의 제도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법제도의 정비와 관련하여 보조사업 운용평가 강화의 주된 이유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리의 미흡으로 보고 있으며,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의 평가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조사업자의 자체비용 부담에 대한 점검, 성과보고서 강화 등을 지침 등으로 규정화해야 함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보조사업운용평가 제도 정립에 관한 내용으로 국고보조사업 평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방식을 준하여 피평가자의 평가자료 준비 등을 위한 행정비용 최소화를 강조하되, 전문가집단의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이를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들의 중립적인 평가결과의 활용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일정을 2월말에 시작되기를 권고하였으며, 선별적인 현지점검 수행, 법적의무지출의 선별적인 검토, 평가대상 선정방식 변경, 한사업에 여러 평가자들의 독립적인 평가 등도 함께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다.

둘째, 김정훈·공동성(2013) 역시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재정사업과 달리 전문가 평가 및 존치평가로서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제외대상에 대해 문제가 있는 사업을 포함하거나 보조사업의 3분의 1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민간단체, 자치단체로 구분

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평가위원의 수를 늘리고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선별적으로 현지점검조사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법제 정비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오윤수·홍수완(2015)은 국고보조사업에 내재한 관리위험을 대리인이론과 정보비대칭이론에 기반하여 단계별로 구체적인 위험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부적정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예산규모 과다 또는 과소편성 등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부조건 설정 및 교부결정의 부적정,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허위보고 등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관리전략으로 효과적인 평가체계의 구축 운영, 평가정보 공개 및 차년도 교부결정에 환류, 체계적인 보조사업 자산관리체계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고보조사업 사전평가에 관한 선행연구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오윤수·홍수완(2015)에서 교부관리 단계의 사업자 선정과정의 부적정, 교부조건 설정 및 교부결정의 부적정을 관리하기 위한 보조사업 선정과정의 합리화를 논의하고 있으나 국고보조사업의 사전평가에 도입으로 연계되지는 않았다.

3. 보조율에 관한 연구

보조금에 관한 연구에서 보조율은 가장 일반적인 연구대상이며, 국고보조율과 관련한 연구로는 이창균(2001), 유영성·이원희(2005), 권오성(2006), 최병호·정종필(2007), 조임곤(2009) 등이 있다.

첫째, 이창균(2001)은 기준보조율의 불명확 및 미준수와 차등보조율 미실시를 문제로 지적하고 기준보조율과 지방비 부담의 개선을 통한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적 사무, 국가 우선적이고 정책적 사무, 광역적이고 지역파급효과 사무, 지역적 사무라는 기준을 이용하여 기준 보조율별로 국가보조사업을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박기목(2002)에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보조율을 현행에서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지자체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지방지부담 방식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공공재의 수요공급법칙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비의 부담을 지자체의 재정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방안으로 재정력 지수가 0.7이상인 지자체에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의 상한율(70%)을 설정하고, 재정력 지수 구간이 0.6~0.7인 지자체에는 지방비 부담을 65%, 그리고 재정력 지수의 범위가 0.1씩 하락하면 지방비 부담도 10%p씩 낮게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유영성·이원희(2005)는 광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실태를 분석하고 새로운 기준을 모색과 아울러 국고보조금의 예측성과 투명성 확보하고 과중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이창균(2001)의 연구와 유사하게 국가사무, 국가시책사무, 광역 및 지역파급사무, 지역사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창균(2001)과 유영성·이원희(2005)의 두 연구에서 국고위탁금 사업, 기관위임사무 중 국가 이해 사업, 국가 전액 부담 필요사업 등을 포함하는 국가사무의 보조율은 100%, 국고부담 사업, 경제 및 지역적 누출 사업, 국가 종합 계획 사업을 포함하는 국가시책사무의 보조율은 80%, 경제 및 지

역적 외부효과 사업, 광역적 수행과 장려사업을 포함하는 광역 및 지역과급 사무의 보조율은 60%, 단체 위임 사무 및 법령사무의 정상적 경비와 기타 국고보조 필요사업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무의 보조율은 40%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권오성(2006)은 국고보조사업을 사업의 성격과 내용으로 유형화하여 보조율 체계의 재설계를 시도하였다. 사업의 성격은 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정도와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의 지역적 범위로 구분하고, 사업의 내용은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국가와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정도는 국가사무, 공통사무(국가이해우선, 공통이해사업, 지방이해우선사업), 자치사무로 구분하고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의 범위는 국지적, 지역적, 전국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사업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사업예산 체계의 분류에 기초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다섯째, 최병호·정종필(2007)의 연구에서는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의 지방비 부담 비율을 결정기준이 되는 기준부담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부담률 설정방안을 제시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을 과급효과, 국가시책사업 여부, 시행주체, 사업비 규모 등 다양한 기준으로 유형별로 분류한 후 각 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점수를 부여하고 기준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사업별 기준부담률을 결정하였으며, 기준부담률 구간별로 사업을 분류한 후 기준부담률 설정방법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조임곤(2009)의 연구에서는 2006년도 국고보조금 자료를 이용하여 기준보조율의 구분근거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가능한 모든 사업의 기준보조율이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기준보조율 설정 기준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외부효과 또는 과급효과, 사업의 예산규모, 중앙정부의 정책 의지 등으로 크게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세부유형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기준보조율을 산정하였다. 즉, 외부성이 크고 국가이해 우선 사무나 국가사무로 인정되는 경우 100%, 외부성이 상당히 크고 국가와 지자체 간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나 국가 우선적이고 특별히 장려하는 경우 80%, 외부성이 광역적인 수준이고 지역사무이지만 광역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지역적 과급효과가 큰 사무는 60%, 외부성이 지역적이고 지역적 사무이지만 국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 40%의 기준보조율 적용을 제안하였다.

제 3 장

고양시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제1절 고양시 국고보조금 현황

제2절 고양시 보조금 집행 현황

제절 고양시 국고보조금 현황⁴⁾

1. 고양시 보조금 총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의하면, 고양시는 20개의 중앙부처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최근 3년(2017~2019년) 간 국고보조금의 총액은 2조 468억원(총 사업 수 1,696건)으로서 사업 당 평균 12.1억 원 수준이다. 고양시 국고보조금을 금액기준으로 부처별로 분석하면, 보건복지부가 1조 6,221억원으로서 전체 국고보조금의 79.2%로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이어서 국토교통부가 1,573억원(전체 국고보조금의 7.7%), 환경부가 1,123억원(전체 국고보조금의 5.5%) 순이며, 나머지 부처의 국고보조금 규모는 크지 않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12개 부처의 국고보조금 규모는 각각 100억원 이하이며, 전체 국고보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각각 1.0% 미만이다.

[표 3-1] 고양시 부처별 국고보조금 - 금액(2017년~2019년)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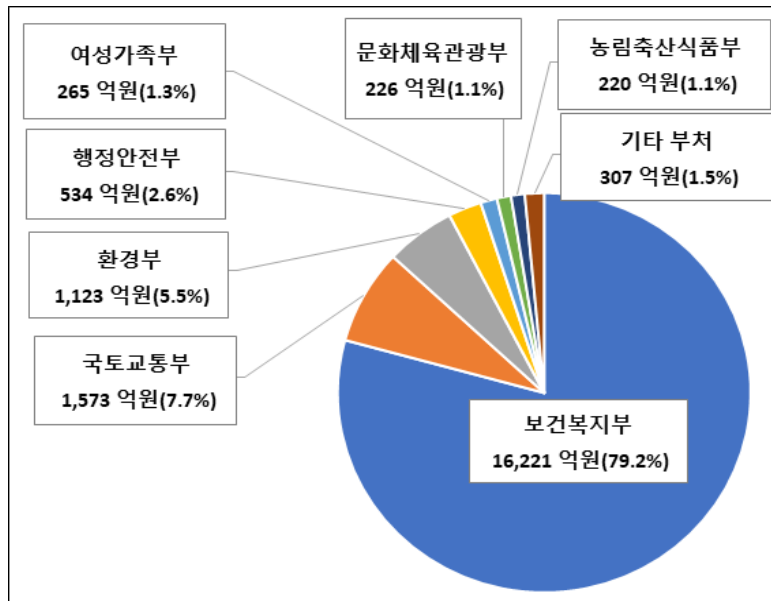
No	부처	금액(억원)	비율(%)
1	보건복지부	16,221	79.2%
2	국토교통부	1,573	7.7%
3	환경부	1,123	5.5%
4	행정안전부	534	2.6%
5	여성가족부	265	1.3%
6	문화체육관광부	226	1.1%
7	농림축산식품부	220	1.1%
8	고용노동부	59	1.5%
9	문화재청	51	0.25%
10	산림청	49	0.24%

¹⁴⁾ 국고보조금은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모두 포함

No	부처	금액(억원)	비율(%)
11	기획재정부	34	0.17%
12	식품의약품안전처	31	0.15%
13	농촌진흥청	25	0.12%
14	산업통상자원부	19	0.09%
15	법무부	18	0.09%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0.05%
17	중소벤처기업부	5	0.02%
18	교육부	3	0.01%
19	외교부	2	0.01%
20	통일부	0.1	0.00%
합계		20,468	100.0%

출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www.gosims.go.kr>) 접속일 2019.10.20.

[그림 3-1] 고양시 부처별 국고보조금(2017년~2019년)
(단위 : 억원, %)



출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www.gosims.go.kr>) 접속일 2019.10.20.

주> 기타부처(12개 부처) : 고용노동부, 문화재청, 산림청,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또한 고양시 국고보조금을 사업 수 기준으로 부처별로 분석하면, 보건복지수가 792건으로 전체 국고보조금 사업 수의 46.7%를 차지하여 가장 많으며,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143건(전체 국고보조금 사업 수의 8.4%), 국토교통부가 129건(전체 국고보조금 사업 수의 7.6%), 여성가족부가 126건(전체 국고보조금 사업 수의 7.4%) 순이다.

[표 3-2] 고양시 부처별 국고보조금 - 사업 수(2017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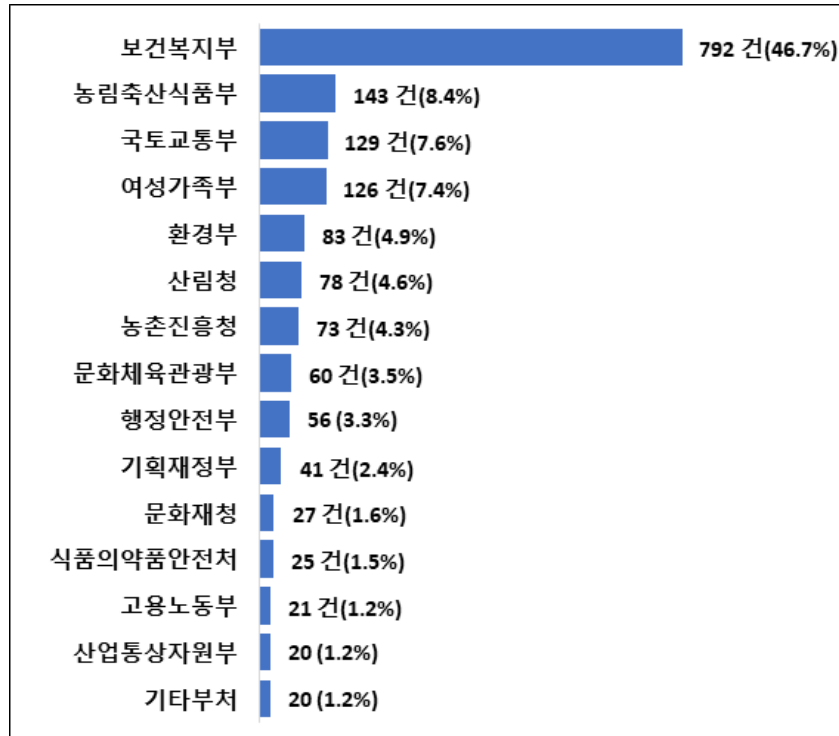
(단위 : 건, %)

부처	사업수(건)	비율(%)
보건복지부	792	46.70%
농림축산식품부	143	8.43%
국토교통부	129	7.61%
여성가족부	126	7.43%
환경부	83	4.89%
산림청	78	4.60%
농촌진흥청	73	4.30%
문화체육관광부	60	3.54%
행정안전부	56	3.30%
기획재정부	41	2.42%
문화재청	27	1.59%
식품의약품안전처	25	1.47%
고용노동부	21	1.24%
산업통상자원부	20	1.18%
법무부	8	0.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0.18%
외교부	3	0.18%
중소벤처기업부	3	0.18%
통일부	3	0.18%
교육부	2	0.12%
합계	1696	100.0%

출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www.gosims.go.kr>) 접속일 2019.10.20.

[그림 3-2] 고양시 부처별 국고보조금 - 사업 수(2017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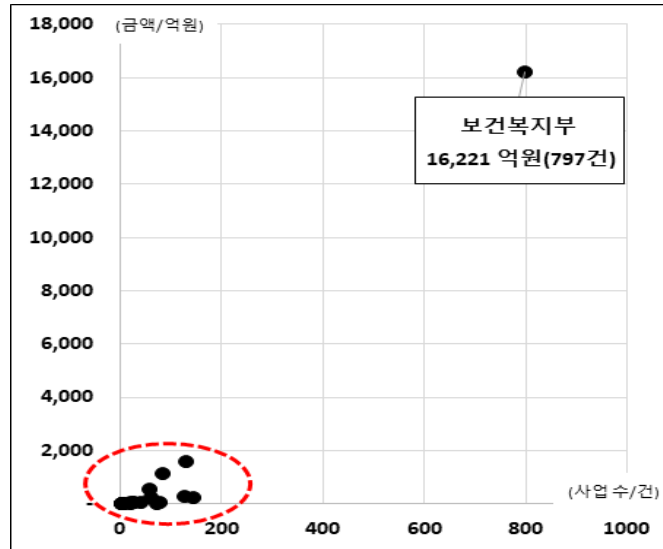
(단위 : 건, %)

출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www.gosims.go.kr>) 접속일 2019.10.20.

주> 기타부처(6개 부처) :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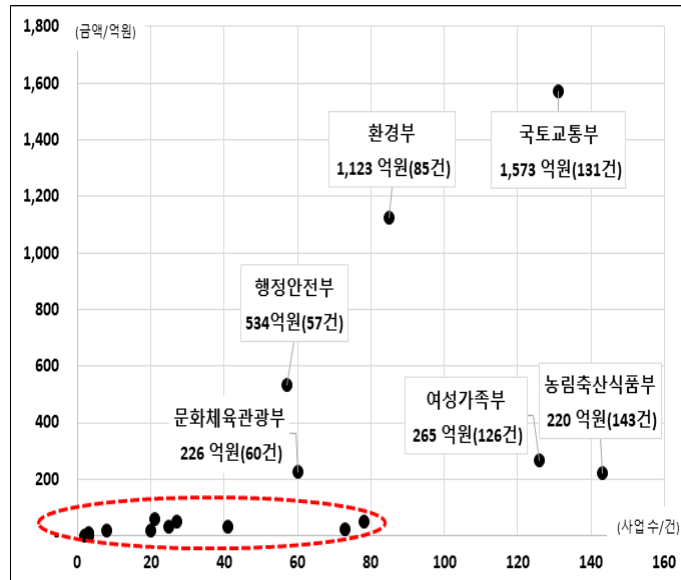
한편, 고양시 국고보조금을 금액과 사업 수를 부처별로 비교하면, 보건복지부가 1조 6,221억원, 797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요 6개 부처이고, 나머지 부처 금액과 사업 수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양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부적 분석은 보건복지부와 주요 6개 부처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림 3-3] 고양시 부처별 국고보조금 현황 - 금액과 사업 수



출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www.gosims.go.kr>) 접속일 2019.10.20.

[그림 3-4] 고양시 부처별 국고보조금 현황 - 금액과 사업 수(복지부 제외)



출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www.gosims.go.kr>) 접속일 2019.10.20.

고양시 국고보조금을 규모별로 사업 수를 분석하면, 1천만원 이하의 소액 규모의 사업이 21.1%를 차지하고 있으며, 1억원 이하의 사업은 전체 사업의 55.8%를 차지한다. 즉, 고양시 국고보조금의 절반이상이 사업규모 1억원을 넘지 않는 소액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5백억원에서 1천억원 규모의 사업도 5건이고 1천억원을 넘는 사업도 2건이나 되었다. 따라서 고양시 국고보조금 사업은 소액사업이 대부분이지만, 소수의 사업은 규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3-3] 고양시 국고보조금의 규모별 사업 수 및 비율

(단위 : 건, %)

구분	사업 수(건)	비율(%)	누계(%)
1000만원이하	358	21.1%	21.1%
1천~1억원	589	34.7%	55.8%
1억~10억원	560	33.0%	88.9%
10억~50억원	130	7.7%	96.5%
50억~100억원	17	1.0%	97.5%
100억~500억원 이상	35	2.1%	99.6%
500억~1000억원 이상	5	0.3%	99.9%
1000억원 이상	2	0.1%	100.0%
합계	1,696	100.00%	

출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www.gosims.go.kr>) 접속일 2019.10.20.

고양시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의 7개 부처의 사업에 대하여 규모별·부처별 사업 수를 분석하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는 1억원에서 10억원 규모의 사업이 가장 많았으나, 여성가족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천만원에서 1억원 규모의 사업이 가장 많았다.

[표 3-4] 국고보조금 규모별 부처별 사업 수 및 비율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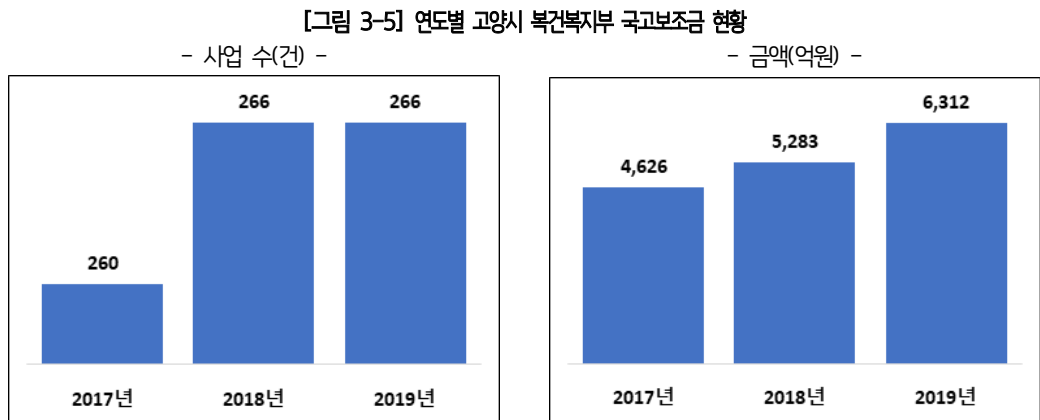
구분		1천만원 이하	1천~1억원	1억~10억원	10억~50억원	50억~100억원	100억~500억원	500억~1000억원	1000억 원 이상	합계
		보건복지부	건수	146	254	274	75	10	26	5
	비율	18.4%	32.1%	34.6%	9.5%	1.3%	3.3%	0.6%	0.3%	100%
국토교통부	건수	17	41	51	14	0	6	0	0	129
	비율	13.2%	31.8%	39.5%	10.9%	0.0%	4.7%	0.0%	0.0%	100%

구분		1천만원 이하	1천~ 1억원	1억~ 10억원	10억~ 50억원	50억~ 100억원	100억~ 500억원	500억~ 1000억 원	1000억 원 이상	합계
환경부	건수	7	20	30	19	6	1	0	0	83
	비율	8.4%	24.1%	36.1%	22.9%	7.2%	1.2%	0.0%	0.0%	100%
행정안전부	건수	7	19	22	5	1	2	0	0	56
	비율	12.5%	33.9%	39.3%	8.9%	1.8%	3.6%	0.0%	0.0%	100%
여성가족부	건수	24	53	44	5	0	0	0	0	126
	비율	19.0%	42.1%	34.9%	4.0%	0.0%	0.0%	0.0%	0.0%	100%
문화체육관광부	건수	11	7	36	6	0	0	0	0	60
	비율	18.3%	11.7%	60.0%	10.0%	0.0%	0.0%	0.0%	0.0%	100%
농림축산식품부	건수	38	70	30	5	0	0	0	0	143
	비율	26.6%	49.0%	21.0%	3.5%	0.0%	0.0%	0.0%	0.0%	100%

출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www.gosims.go.kr>) 접속일 2019.10.20.

2. 고양시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고양시의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의 사업 수는 2017년 260건에서 2018년과 2019년 266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금액도 2017년 4,626억원에서 2018년 5,283억원, 2019년 6,312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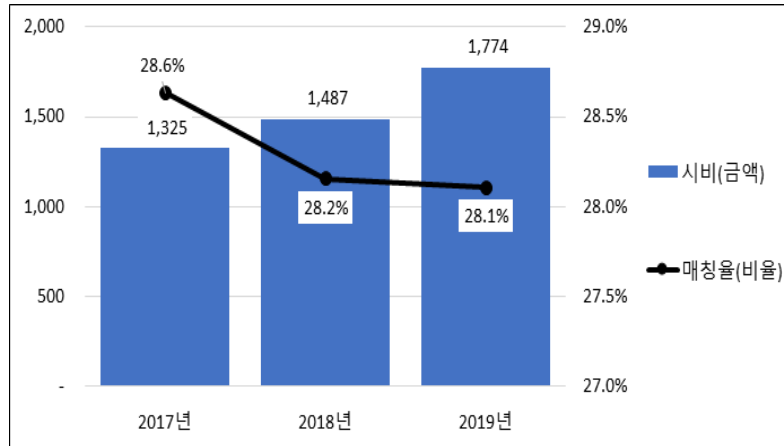


출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www.gosims.go.kr>) 접속일 2019.10.20.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고양시 시비 매칭 금액은 2017년 1,325억원에

서 2018년 1,487억원, 2019년 1,774억원으로 증가하였고, 매칭율은 2017년 28.6%에서 2018년 28.2%, 2019년 28.1%로 약간 감소하였다.

[그림 3-6] 연도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시비 금액 및 비율
(단위 : 억원, %)



출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www.gosims.go.kr>) 접속일 2019.10.20.

고양시의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사업을 중 가장 규모 큰 대표적인 3대 사업은 기초연금 지급,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며, 매년 각각 30%와 25%의 시비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 지급의 경우 2019년 국고보조금의 금액이 2017년 대비 666.4억 원이 늘어나서 약 44.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같은 기간 57.6억 원 증가에 그쳐서 약 6.0%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가정양육수당은 같은 기간 오히려 47.5억 원이 줄어들어 -15.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연도별 고양시 보건복지부 주요 국고보조금 및 매칭

(단위 : 억원, %)

구분	사업수(건)	2017년	2018년	2019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기초연금 지급(a)	1,512	1,776	2,179	
	영유아보육료 지원(b)	959	993	1,016	
	가정양육수당 지원(c)	307.8	313.48	260	
고양시 국고보조금 매칭	기초연금 지급	금액(d)	462	533	654
		비율(d/a)	30.6%	30.0%	30.0%

구분	사업수(건)	2017년	2018년	2019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금액(e)	239.64	248.23	254.0384
	비율(e/b)	25.0%	25.0%	25.0%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f)	77	78	65
	비율(f/c)	25.0%	25.0%	25.0%

출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www.gosims.go.kr>) 접속일 2019.10.20.

3. 고양시 주요 중앙부처 보조금 분석

고양시의 국고보조금 관련 주요 6개 부처의 연도별 사업 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9년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사업 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같은 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금 사업 수는 오히려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같은 주요 6개 부처의 연도별 금액을 분석하면, 2018년도에 전년대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19년에 다시 상승하였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은 2019년도에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표 3-6] 고양시 주요 중앙부처 연도별 국고보조금 사업 수 및 금액

(단위 : 억원, 건)

구분	사업수(건)			금액(억원)		
	2017	2018	2019	2017년	2018년	2019년
국토교통부	38	40	53	729	309	535
환경부	31	25	29	524	248	351
행정안전부	18	19	20	167	165	202
여성가족부	41	42	43	79	76	110
문화체육관광부	19	21	20	71	63	92
농림축산식품부	40	56	47	63	98	59

출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www.gosims.go.kr>) 접속일 2019.10.20.

이러한 주요 6개 중앙부처의 3년간 국고보조금 사업을 고양시 매칭비율에 따라 분석하면, 매칭비율이 20%이내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부(73건, 전체 사업 수의 56.6%)와 농림축산식품부(45건, 전체 사업 수의 31.5%)이고, 매칭비율이 20%에서

40%가 가장 많은 부처는 여성가족부(56건, 전체 사업 수의 44.4%)이다. 그리고 매칭비율이 40%에서 60%가 가장 많은 부처는 환경부(41건, 전체 사업 수의 49.4%), 행정안전부(33건, 전체 사업 수의 58.9%), 문화체육관광부(36건, 전체 사업 수의 60.0%)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에서 고양시의 시비를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 반면에, 환경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사업에서 고양시의 시비가 상대적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기 주요 중앙부처 국고보조금의 고양시 매칭비율별 사업 수

(단위 : 건, %)

구분		20%이내	20%~40%	40%~60%	60%~80%	80%이상	합계
국토교통부	건수	73	25	23	6	2	129
	비율	56.6%	19.4%	17.8%	4.7%	1.6%	100%
환경부	건수	13	24	41	5	0	83
	비율	15.7%	28.9%	49.4%	6.0%	0.0%	100%
행정안전부	건수	3	7	33	11	2	56
	비율	5.4%	12.5%	58.9%	19.6%	3.6%	100%
여성가족부	건수	11	56	44	14	1	126
	비율	8.7%	44.4%	34.9%	11.1%	0.8%	100%
문화체육관광부	건수	3	8	36	10	3	60
	비율	5.0%	13.3%	60.0%	16.7%	5.0%	100%
농림축산식품부	건수	45	41	38	18	1	143
	비율	31.5%	28.7%	26.6%	12.6%	0.7%	100%

출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www.gosims.go.kr>) 접속일 2019.10.20.

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상에서 국토교통부 2건, 환경부 2건, 행정안전부 1건은 고양시 매칭비율이 나타나지 않음

제2절 고양시 보조금 집행 현황

1. 고양시의 중앙부처 보조금 집행 분석¹⁵⁾

1) 고양시의 중앙부처 보조금 사업 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고양시 보조금(일반회계 기준) 집행 중에서 중앙정부 부처의 사업 수는 총 1,203건으로서, 부처 당 평균 57.3건이다. 사업수를 부처별로 분석하면, 보건복지부가 601건(전체 사업 수의 50.0%)으로 가장 많고, 농림축산식품부 100건(전체 사업 수의 8.3%), 여성가족부 85건(전체 사업 수의 7.1%)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무부, 교육부 등 6개 부처는 10건 미만의 극히 적은 수의 사업이 집행되었다. 따라서 고양시의 중앙정부 부처 보조금 사업 수는 보건복지부가 과반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8] 고양시의 중앙정부 부처 보조금 사업 수

(단위 : 건)

No	중앙부처	사업 수	비율
1	보건복지부	601	50.0%
2	농림축산식품부	100	8.3%
3	여성가족부	85	7.1%
4	산림청	67	5.6%
5	농촌진흥청	61	5.1%
6	환경부	52	4.3%
7	행정안전부	46	3.8%
8	문화체육관광부	40	3.3%
9	국토교통부	33	2.7%
10	식품의약품안전처	25	2.1%
11	기획재정부	18	1.5%
12	고용노동부	16	1.3%

¹⁵⁾ 분석 데이터는 고양시의 연도별 결산서 첨부 자료의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추출하였으며, '사업 명'을 기준으로 분석함.

No	중앙부처	사업 수	비율
13	산업통상자원부	13	1.1%
14	대법원	12	1.0%
15	문화재청	11	0.9%
16	법무부	7	0.6%
17	교육부	4	0.3%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0.2%
19	외교부	3	0.2%
20	중소벤처기업부	3	0.2%
21	통일부	3	0.2%
-	(합계)	1,203	100.0%
-	부처 평균	57.3	-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

2) 고양시의 중앙부처 보조금 사업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고양시 보조금(일반회계 기준) 집행 중에서 중앙정부 부처의 사업 금액은 총 1조 7,493억 원으로 부처 당 평균 833억 원이다. 사업 금액을 부처별로 분석하면, 보건복지부가 1조 4,397억 원로서 전체 사업비의 82.3%를 차지하며, 국토교통부가 1,023억 원(전체 사업비의 5.8%), 환경부가 401억 원(전체 사업비의 2.3%), 행정안전부가 391억 원(전체 사업비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법원,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등 6개 부처는 10억원 미만의 극히 적은 금액의 사업이 집행되었다. 따라서 고양시의 중앙정부 부처 보조금 사업비는 절대 다수가 보건복지부 사업비라고 할 수 있다.

[표 3-9] 고양시의 중앙정부 부처 보조금 사업비

(단위 : 억원)

No	중앙부처	사업비	비율
1	보건복지부	14,397	82.3%
2	국토교통부	1,023	5.8%
3	환경부	401	2.3%
4	행정안전부	391	2.2%
5	여성가족부	286	1.6%
6	문화체육관광부	268	1.5%
7	농림축산식품부	234	1.3%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6	0.8%

No	중앙부처	사업비	비율
9	문화재청	61	0.3%
10	기획재정부	51	0.3%
11	산업통상자원부	49	0.3%
12	산림청	45	0.3%
13	고용노동부	37	0.2%
14	식품의약품안전처	30	0.2%
15	농촌진흥청	26	0.1%
16	법무부	23	0.1%
17	중소벤처기업부	10	0.1%
18	대법원	9	0.1%
19	교육부	5	0.0%
20	외교부	2	0.0%
21	통일부	0	0.0%
-	(합계)	17,493	100.0%
-	(부처 평균)	833.0	-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

3) 고양시의 중앙부처 보조금 사업 수와 사업비 비교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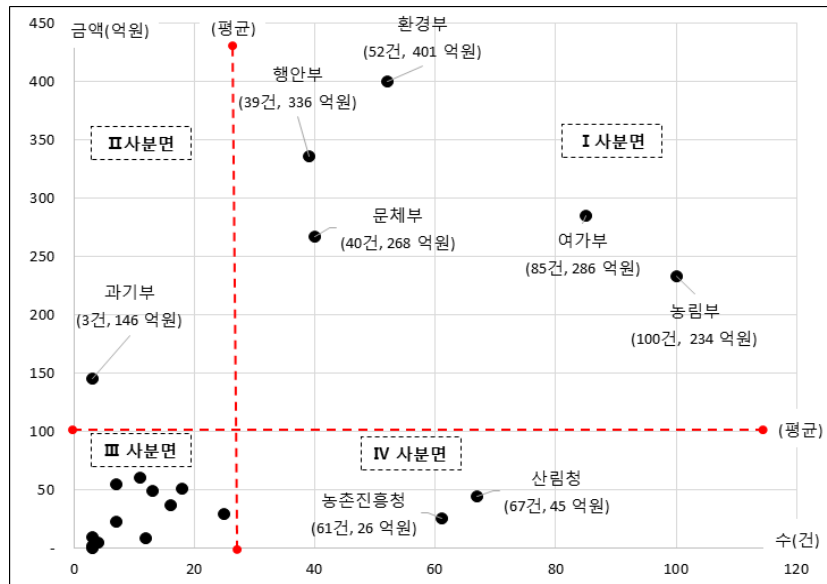
사업 수와 금액이 다른 부처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를 제외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고양시의 보조금(일반회계 기준) 사업 수와 사업비를 비교분석하면, 부처의 전체 사업 수는 569건(부처 평균 28.5건)이고, 사업비는 2,074억 원(부처 평균 103.7억 원)이다. 이러한 사업 수와 사업비를 평균값으로 구분하여 4사분면으로 나누면, 대부분 사업 수와 사업비가 모두 적은 3사분면에 몰려있지만, 사업 수와 사업비가 모두 많은 1사분면에도 5개 부처(환경부, 행안부, 문체부, 여가부, 농림부)가 있다. 그리고 사업 수는 적으나 사업비가 많은 2사분면 1개 부처(과기부), 사업 수는 많으나 사업비가 적은 4사분면 2개 부처(산림청, 농촌진흥청)가 해당한다. 다만,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을 동일한 농업관련 사업이라고 한다면,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사업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보조금 사업이 많이 집행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양시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는 사업 수와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¹⁶⁾ 사업 수와 금액의 비교는 부처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보건복지부(601건, 1조 4,397억 원)와 국토교통부(33건, 1,023억 원)는 제외함.

환경부, 행안부, 문체부, 여가부, 농림부 등 총 5개 부처에 대하여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림 3-기] 고양시 중앙부처 보조금 사업 수와 금액 비교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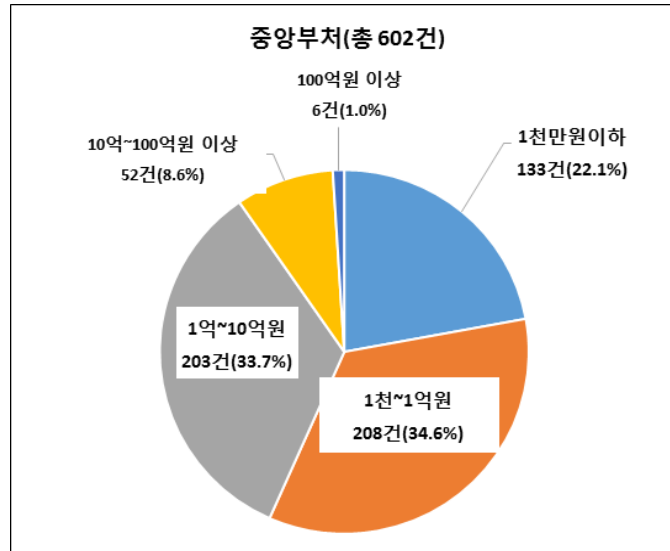
4) 고양시의 중앙부처 보조금 사업비 규모별 사업 수¹⁷⁾

사업 수와 사업비 측면에서 예외적인 보건복지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앙부처의 고양시 보조금(일반회계 기준) 602건을 사업비의 규모별로 분석하면, 1천만원에서 1억원 규모의 사업이 208건(전체 사업 수의 34.6%)으로 가장 많고, 1억원에서 10억원 규모의 사업이 203건(전체 사업 수의 33.7%)으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1천만원이하의 사업도 133건(전체 사업 수의 22.1%)이나 되어 소규모 보조금 사업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¹⁷⁾ 금액 규모별 사업 수는 부처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보건복지부는 제외함.

[그림 3-8] 고양시의 중앙부처 보조금 사업비 규모별 사업 수(비율)

(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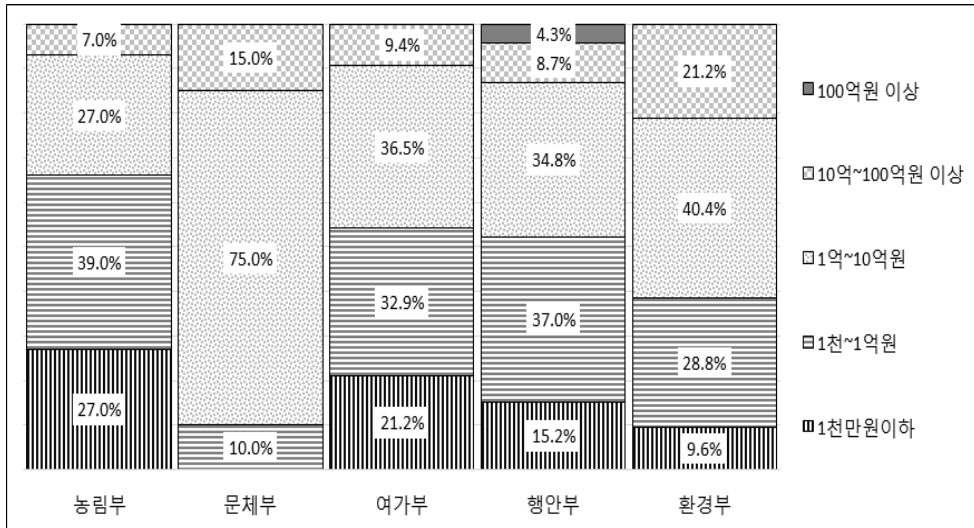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

고양시의 중앙부처 보조금 사업의 수와 사업비 비교에서 1사분면에 해당하는 5개 부처의 사업을 사업비 규모별로 비율을 분석하면, 농림부와 행안부는 사업비가 1천만원에서 1억원의 사업이 각각 39.0%와 37.0%로 가장 많고, 문체부, 여가부, 환경부는 사업비가 1억원에서 10억원의 사업이 각각 75.0%, 36.5%, 40.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행안부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도 4.3%나 있고, 환경부의 경우 10억원에서 100억원의 사업이 21.2%로서 다른 중앙부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9] 고양시의 주요 중앙부처 보조금 사업 규모별 사업 수

(단위 : %)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

2. 고양시의 보건복지부 보조금 분석¹⁸⁾

1) 고양시의 보건복지부 보조금 집행 규모

고양시가 집행한 보건복지부 보조금(일반회계 기준) 사업 수와 금액은 2016년 154건과 4,410억원, 2017년 221건과 4,642억원, 2018년 226건과 5,3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고양시가 집행한 보건복지부 보조금을 재원별로 구분하면,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각각 70.7%, 10.6%, 18.6%를 차지하며, 2018년 국비와 도비 보조금은 직전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반면에 시비 보조금은 직전연도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¹⁸⁾ 보건복지부 보조금은 보건복지부의 국비보조금과 그에 따라 매칭 하는 경기도의 도비보조금, 고양시의 시비를 모두 포함하며, 데이터는 고양시의 연도별 결산서에서 보건복지부만의 보조금 집행 내역에서 추출하였으며, ‘사업 명’을 기준으로 분석함.

[표 3-10] 연도별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 사업 수와 예산액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사업 수	154	221	226	601
예산액(총사업비)	4,410(100%)	4,643(100%)	5,344(100%)	14,397(100%)
국비(%)	3,136(71.1%)	3,310(71.3%)	3,734(69.9%)	10,180(70.7%)
도비(%)	469(10.6%)	516(11.1%)	547(10.2%)	1,532(10.6%)
시비(%)	804(18.2%)	816(17.6%)	1,064(19.9%)	2,685(18.6%)

(건, 억원, %)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

한편, 고양시가 3년간 집행한 보건복지부 보조금의 집행률은 총 98.0%이며, 시비 집행률이 국비와 도비 집행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별 연도별 집행률에서도 대체적으로 국비가 가장 높고 시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가 집행한 601건의 보건복지부 보조금 사업은 1억원에서 10억원 규모의 사업이 219건(36.4%)으로 가장 많고, 1천만원에서 1억원 규모의 사업이 171건(28.5%), 1천만원 이하 규모의 사업이 114건(19.0%), 10억원에서 100억원 규모의 사업이 67건(11.1%), 1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이 30건(5.0%)이었다. 그러나 고양시의 보건복지부 보조금 사업 중 시비가 투입된 552건¹⁹⁾을 사업 규모별로 분석하면, 1천만원에서 1억원 규모의 사업이 204건(37.0%)로 가장 많고, 1억원에서 10억원 규모의 사업이 147건(26.6%), 1백만원에서 1천만원 규모의 사업이 109건(19.7%), 1백만원 이하 규모의 사업이 51건(9.2%), 1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이 41건(7.4%)이었다.

¹⁹⁾ 2016~2018 고양시의 보건복지부 보조금 사업 602건 중 49건은 고양시의 시비 없이 진행되었음.

[표 3-11] 연도별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 수령액 및 집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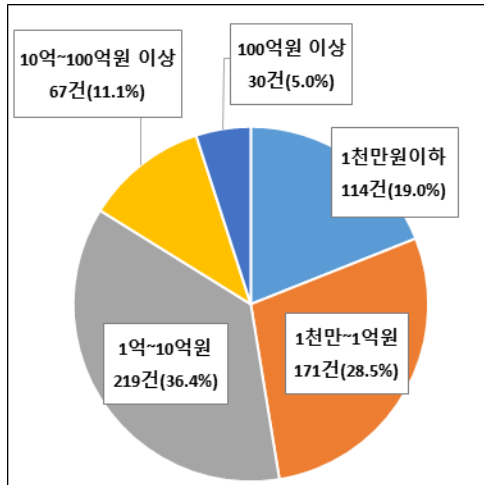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수령액(a)	4,408	4,643	5,344	14,395
국비(b)	3,135	3,310	3,734	10,179
도비(c)	469	516	547	1,532
시비(d)	804	816	1,064	2,684
집행 총액(e)	4,335	4,563	5,205	14,104
총 집행률(e/a)	98.4%	98.3%	97.4%	98.0%
국비(f)	3,092	3,259	3,677	10,028
국비 집행률(f/b)	98.6%	98.4%	98.5%	98.5%
도비(g)	462	506	536	1,504
도비 집행률(g/c)	98.6%	98.1%	98.0%	98.2%
시비(h)	781	798	992	2,572
시비 집행률(h/d)	97.1%	97.8%	93.3%	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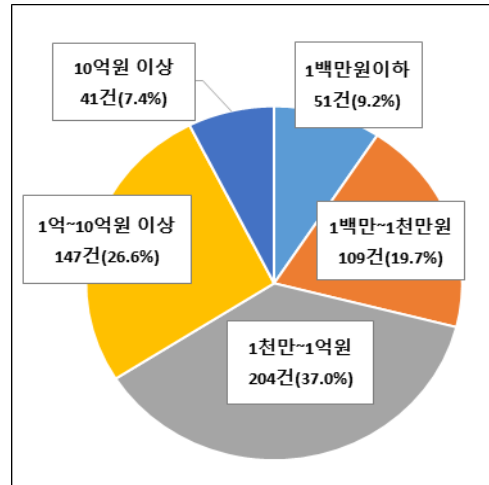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

[그림 3-10]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 사업 규모별 사업 수(비율)

- 총사업비(건, %) -



- 시비(건, %) -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

2) 고양시의 보건복지부 보조금 주요 사업별²⁰⁾ 집행 분석

(1) 기초연금 보조금 집행

기초연금은 노후생활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으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수급액은 2019년 기준으로 일반수급자 월 최대 253,750원, 저소득 수급자 월 최대 300,000원이다. 이러한 기초연금지급 신청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동 주민 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받는다.

최근 3년간 고양시의 기초연금 관련 보조금(일반회계기준)의 총 사업비는 4,744억 원이며, 국비 3,320억원(70.0%), 도비 285억원(6.0%), 시비 1,138억원(24.0%)으로 구성되었다. 기초연금의 사업비는 3개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하며, 덕양구 가정복지과가 매년 전체 기초연금 사업비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산동구 가정복지과와 일산서구 가정복지과는 매년 사업비의 비율이 비슷하다.

[표 3-12] 고양시 보조금(기초연금)의 재원별 비율 : 3년간(2016~2018) 합계

(단위 : 억원, %)

구분		총 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기초연금지급	금액(억원)	4,744	3,320	285	1,138
	비율(%)	100.0%	70.0%	6.0%	24.0%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아월금 미포함)”, 각 연도.

[표 3-13] 연도별/부서별 보조금(기초연금) 사업비 규모와 비율

(단위 :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억원)	비율(%)	금액(억원)	비율(%)	금액(억원)	비율(%)
덕양구 가정복지과	757	52.8%	803	52.4%	935	52.6%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352	24.5%	377	24.6%	433	24.4%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325	22.7%	354	23.1%	408	23.0%
합계	1,434	100.0%	1,534	100.0%	1,776	100.0%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아월금 미포함)”, 각 연도.

²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속으로 보조금이 집행된 39개 사업(개별 사업으로 91건) 중에서 상위 5개 사업(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생계급여,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을 대상으로 집중 분석하였음.

고양시의 부서별 기초연금의 집행률을 연도별로 분석하면, 대체적으로 99.0%를 상회하는 높은 집행률을 나타낸다. 다만, 2016년 덕양구 가정복지과의 경우 집행률이 97.4%로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났다.

[표 3-14] 연도별부서별 보조금(기초연금) 집행률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덕양구 가정복지과	97.4%	99.9%	99.2%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99.5%	99.8%	99.5%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99.8%	99.5%	99.8%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

(2) 영유아 보육료 보조금 집행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만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서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기본 보육료와 부모 보육료로 나누어 연령에 따라 지급되며, 맞벌이, 다자녀, 장애, 입원 및 간병 등 시설 보육 필요 정도가 큰 아동은 종일반 보육료가 지원되고, 그 외의 아동은 맞춤형 보육료가 지원된다.

최근 3년간 고양시 영유아 보육료 관련 보조금(일반회계기준)의 총 사업비는 3,059억 원이며, 국비 2,202억원(72.0%), 도비 514억원(16.8%), 시비 343억원(11.2%)으로 구성되었다. 영유아 보육료의 사업비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집행하며, 집행률은 약 98.3%에 이른다. 다만, 아동청소년과의 2018년 영유아 보육료 보조금은 사업비가 1,115억원으로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집행률은 95.6%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고양시 보조금(영유아보육료)의 재원별 비율 : 3년간(2016~2018) 합계

(단위 : 억원, %)

구분	총 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영유아보육료	금액(억원)	3,059	2,202	514	343
	비율(%)	100.0%	72.0%	16.8%	11.2%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

[표 3-16] 연도별 보조금(영유아보육료) 사업비 규모와 집행률

(단위 :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아동청소년과	금액(억원)	972	971	1,115	3,059
	집행률(%)	99.6%	100.0%	95.6%	98.3%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아월금 미포함)", 각 연도.

(3) 생계급여 보조금 집행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로서,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한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생계급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고양시의 생계급여 관련 보조금(일반회계기준) 총 사업비는 1,609억 원이며, 국비 1,448억원(90.0%), 도비 113억원(7.0%), 시비 48억원(3.0%)으로 구성되었다. 생계급여의 사업비는 본청의 4개과(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3개 구청 시민복지과 그리고 일산동구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생계급여 사업비의 규모나 비율로 분석하면, 덕양구 시민복지과가 매년 전체 사업비의 약 52%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일산동구 시민복지과는 매년 전체 사업비의 약 22.0%, 일산서구 시민복지과는 매년 전체 사업비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7] 고양시 보조금(생계급여)의 재원별 비율 : 3년간(2016~2018) 합계

(단위 : 억원, %)

구분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생계급여	금액(억원)	1,609	1,448	113	48
	비율(%)	100.0%	90.0%	7.0%	3.0%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아월금 미포함)", 각 연도.

[표 3-18] 연도별/부서별 보조금(생계급여) 사업비 규모와 비율

(단위 :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억원)	비율(%)	금액(억원)	비율(%)	금액(억원)	비율(%)
노인복지과	18.3	3.7%	20.7	3.8%	24.0	4.2%
장애인복지과	7.8	1.6%	7.5	1.4%	7.4	1.3%
여성가족과	0.2	0.04%	0.3	0.05%	0.3	0.05%
아동청소년과	1.3	0.3%	-	-	1.4	0.2%
덕양구 시민복지과	253.4	51.0%	286.3	52.4%	295.6	52.2%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113.7	22.9%	122.2	22.4%	124.7	22.0%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96.3	19.4%	103.2	18.9%	107.2	18.9%
일산동구보건소	5.4	1.1%	5.8	1.1%	5.9	1.0%
합계	496.4	100.0%	545.9	100.0%	566.4	100.0%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아월금 미포함)”, 각 연도

주> 2017년 아동청소년과는 생계급여 보조금이 없음.

고양시의 부서별 생계급여의 집행률을 연도별로 분석하면, 대체적으로 99.0%를 상회하는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18년은 다른 연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생계급여 보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여성가족과(2018년 생계급여 보조금 0.3억원, 집행률 79.8%), 아동청소년과(2018년 생계급여 보조금 1억 4천, 집행률 92.5%), 노인복지과(2018년 생계급여 보조금 24억원, 집행률 94.1%) 등에서 낮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9] 연도별/부서별 보조금(생계급여) 집행률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노인복지과	99.3%	98.9%	94.1%
장애인복지과	98.0%	96.6%	94.2%
여성가족과	99.0%	94.2%	79.8%
아동청소년과	95.8%	-	92.5%
덕양구 시민복지과	99.9%	99.7%	99.1%
일산동구 시민복지과	99.7%	98.1%	96.7%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일산서구 시민복지과	99.8%	99.3%	98.2%
일산동구보건소	99.7%	99.7%	97.3%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

주> 2017년 아동청소년과는 생계급여 보조금 집행이 없음.

(4) 가정양육수당 보조금 집행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하는 경우 부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가정양육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학비, 돌보서비스 지원 등을 받지 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87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의 지원금은 영유아의 월령, 장애하동 여부, 농어촌 거주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러한 가정양육수당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고양시 가정양육수당 관련 보조금(일반회계기준)의 총 사업비는 926억원이며, 국비 695억원(75.0%), 도비 162억원(17.5%), 시비 69억원(7.5%)으로 구성되었다. 가정양육수당의 사업비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집행하며, 집행률은 약 99.6%에 이른다. 다만, 고양시의 가정양육수당 보조금의 사업비 규모는 2016년 347억원에서 2018년 271억원으로 21.7%나 줄어들었다.

[표 3-20] 고양시 보조금(가정양육수당)의 재원별 비율 : 3년간(2016~2018) 합계

(단위 : 억원, %)

구분	총 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가정양육수당	금액(억원)	926	695	162	69
	비율(%)	100.0	75.0	17.5	7.5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

[표 3-21] 연도별 보조금(양육수당) 사업비 규모와 집행률

(단위 :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아동청소년과	금액(억원)	347	308	271	926
	집행률(%)	99.2	99.8	99.8	99.6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

(5)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보조금 집행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은 국공립이나 법인 등 취약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은 교직원의 호봉에 따라 월 지급액의 정률지원 하며, 보육시설 원장, 유아반교사, 조리원이 해당된다.

최근 3년간 고양시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관련 보조금(일반회계기준) 총 사업비는 767억 원이며, 국비 452억원(59.0%), 도비 211억원(27.5%), 시비 104억원(13.5%)으로 구성되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의 사업비는 본청의 1개과(아동청소년과), 3개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사업비의 규모나 비율로 분석하면, 본청 아동청소년과가 매년 전체 사업비의 약 51%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덕양구 가정복지과가 매년 전체 사업비의 약 22%, 일산서구 가정복지과가 매년 전체 사업비의 약 14%, 일산동구 가정복지과가 매년 전체 사업비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2] 고양시 보조금(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의 자원별 비율 : 3년간(2016~2018) 합계

(단위 : 억원, %)

구분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금액(억원)	767	452	211	104
	비율(%)	100.0%	59.0%	27.5%	13.5%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

[표 3-23] 연도별/부서별 보조금(생계급여) 사업비 규모와 비율

(단위 :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억원)	비율(%)	금액(억원)	비율(%)	금액(억원)	비율(%)
아동청소년과	123.4	51.5%	130.8	51.4%	141.2	51.7%
덕양구 가정복지과	53.6	22.4%	58.1	22.8%	62.9	23.0%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35.9	15.0%	36.8	14.5%	38.7	14.2%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26.5	11.1%	28.9	11.3%	30.3	11.1%
합계	239.4	100.0%	254.6	100.0%	273.1	100%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

고양시의 부서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의 집행률을 연도별로 분석하면, 대체적으로 9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7년과 2018년 덕양구 가정복지과의 경우 다른 부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표 3-24] 연도별부서별 보조금(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집행률

(단위 :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아동청소년과	98.5%	100.0%	98.3%
덕양구 가정복지과	98.8%	95.0%	96.2%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98.8%	98.6%	98.7%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98.2%	96.9%	98.8%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

3. 고양시의 경기도 보조금 집행 분석²¹⁾

1)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집행 규모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고양시 보조금(일반회계 기준) 집행 중에서 경기도의 사업 수는 총 780건이며, 금액은 5,770억 원이다. 사업 수를 분야별로 분석하면, 사회복지가 361건으로 가장 많고, 농림해양수산업이 145건, 문화 및 관광이 61건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금액을 분야별로 분석하면, 사회복지가 3,68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일반공공행정이 788억원, 산업·중소기업이 36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5] 고양시의 경기도 보조금 사업 수와 금액

(단위 : 건, %, 억원)

No	분야	사업 수	분야	금액
1	사회복지	363	사회복지	3,689
2	농림해양수산업	145	일반공공행정	788
3	문화및관광	61	산업·중소기업	367
4	일반공공행정	48	농림해양수산업	186
5	보건	36	공공질서및안전	182
6	환경보호	32	국토및지역개발	178
7	국토및지역개발	26	문화및관광	127
8	수송및교통	21	교육	114
9	산업·중소기업	18	보건	57
10	공공질서및안전	17	수송및교통	56
11	교육	13	환경보호	25
-	합계	780	합계	5,770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아울금 미포함)”, 각 연도.

2)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의 규모별 사업 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777건²²⁾의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일반회계 기준) 집행 사업을 금액 규모별로 분석하면, 1천만원에서 1억원 규모와 1억원에서 10억원 규모의 사업이 각각 298건(38.4%)와 293건(37.7%)으로 가장 많고, 1천만원 이하 규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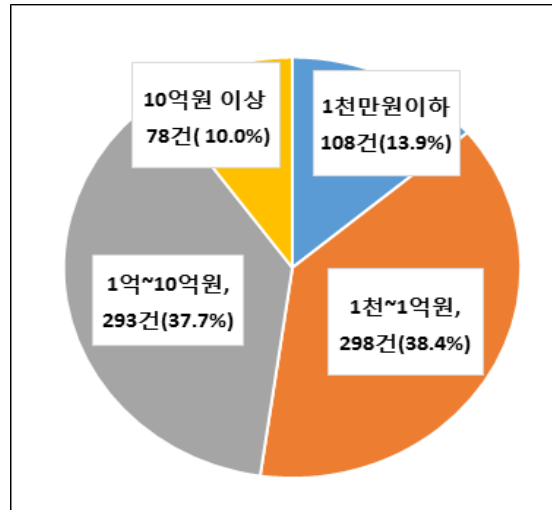
²¹⁾ 경기도 보조금은 경기도의 지방보조금을 의미하며, 국비 보조금은 제외함.

²²⁾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780건 중에서 3건은 당초 사업예산이 수립되지 않아서 분석에서 제외함.

사업은 108건(13.9%)으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10억원 이상의 사업도 78건(10.0%)이었다.

[그림 3-11]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사업의 금액 규모별 사업 수

(단위 : 건)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

3)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의 사업 수와 금액 비교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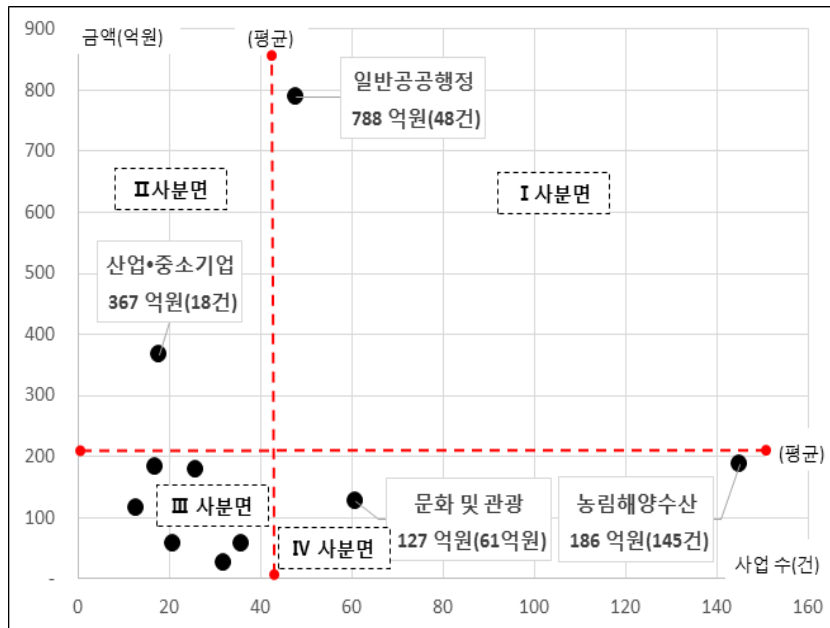
사업 수와 금액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사회복지를 제외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일반회계 기준) 집행 사업 수와 금액을 분야별로 비교분석하면, 사업 수(40건 이하)도 적고 금액(200억원 이하)도 적은 3사분면에 가장 많고, 사업 수와 금액이 많은 1사분면은 1개 분야(일반공공행정), 사업 수는 적으나 금액이 많은 2사분면도 1개 분야(산업·중소기업), 사업 수는 많으나 금액이 적은 4사분면은 2개 분야(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가 해당한다.

따라서 고양시의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는 사업 수와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²³⁾ 사업 수와 금액의 비교는 분야의 전체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사회복지분야는 제외함.

일반공공행정, 산업·중소기업,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등 총 4개 분야에 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2]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사업수와 금액 비교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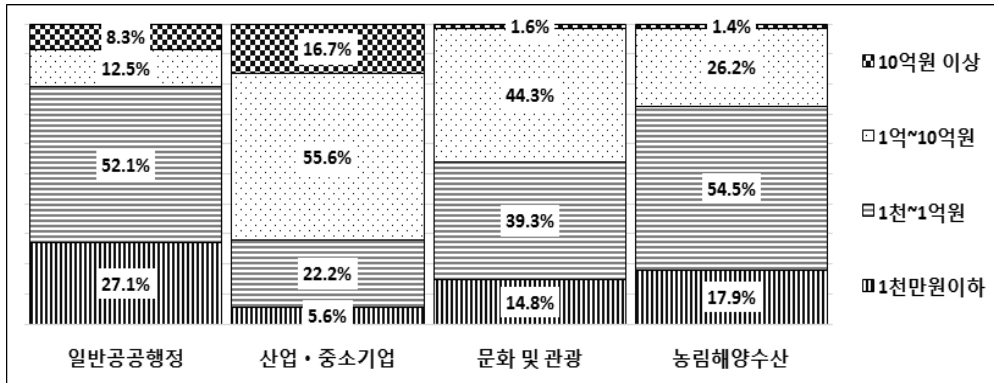
4)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의 사업규모별 분포²⁴⁾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사업의 수와 금액 비교에서 1, 2, 4사분면에 해당하는 4개 분야의 사업을 금액 규모별로 비율을 분석하면, 일반공공행정과 농림해양수산은 1천만원에서 1억원 규모의 사업이 가장 많고, 산업·중소기업과 문화 및 관광은 1억원에서 10억원 규모의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²⁴⁾ 사업규모별 분포는 보조금 사업 수와 금액 비교에서 1, 2, 4사분면에 해당하는 분야만 분석함.

[그림 3-13]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사업 주요 4개 분야의 금액 규모별 사업 수

(단위 : 건)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

5) 고양시 경기도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 사업 분석

고양시 경기도 사회복지 보조금(일반회계 기준) 사업 수와 금액은 2016년 118건과 1,070억원, 2017년 117건과 1,203억원, 2018년 128건과 1,417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사회복지 보조금의 재원별 비율은 도비, 시비가 각각 43.0%, 57.0%이지만, 대체적으로 도비의 비율은 감소하고 시비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3-26] 연도별 고양시의 경기도 사회복지 보조금 사업수와 예산액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사업 수	118	117	128	363
예산액(총사업비)	1,070(100%)	1,203(100%)	1,417(100%)	3,689(100%)
도비(%)	491(45.9%)	530(44.1%)	567(40.0%)	1,588(43.0%)
시비(%)	579(54.1%)	673(55.9%)	850(60.0%)	2,101(57.0%)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

한편, 고양시의 경기도 사회복지 보조금 집행률을 분석하면, 3년간 총 집행률은 95.6%이고 도비 집행률은 98.2%이지만, 시비 집행률은 78.2%에 불과하다. 더욱이 시비 집행률은 2016년 96.0%, 2017년 78.8%, 2018년 65.7%로서 매년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다.

[표 3-27] 연도별 경기도 사회복지 보조금 수령액 및 집행률

(단위 :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수령액(a)	1,070	1,187	1,416	3,674
도비(b)	491	530	567	1,588
시비(c)	579	657	850	2,086
집행 총액(d)	1,039	1,139	1,336	3,514
총 집행률(d/a)	97.12%	95.90%	94.32%	95.6%
도비(e)	484	518	558	1,559
도비 집행률(e/b)	98.48%	97.69%	98.41%	98.2%
시비(f)	555	518	558	1,631
시비 집행률(f/c)	96.0%	78.8%	65.7%	78.2%

출처 : 고양시, “2016~2018회계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

제 4 장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특성

제1절 보조금 세출예산 편성 및 통계목

제2절 고양시 보조금의 통계목별 분석

제3절 고양시 보조금의 분야 및 부문 분석

제절 보조금 세출예산 편성 및 통계목

1. 세출예산 편성의 개요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와 성질별 분류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는 13개 분야 52개 부문으로 세분화되고 사업은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 순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사업은 재정사업과 업무를 대상으로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인 단위사업의 설정 근거가 된다. 단위사업은 정책사업을 세분화 다수의 실행단위로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근거가 된다. 세부사업은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 개의 사업단위로서, 가장 하위의 사업단위가 된다.

[표 4-1] 지자체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표(분야부문)

분야	부문	분야	부문	분야	부문	
010	일반공공행정(4)	070	환경(6)	11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6)	
	011	입법 및 선거관리	071	상하수도·수질	111	산업금융지원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72	폐기물	112	산업기술지원
	014	재정·금융	073	대기	113	무역 및 투자유치
	016	일반행정	074	자연	114	산업진흥·고도화
020	공공질서 및 안전(3)	075	해양	115	에너지 및 자원개발	
	023	경찰	076	환경보호일반	116	산업·중소기업 일반
	025	재난방재민방위	080	사회복지(8)	120	교통 및 물류(5)
	026	소방	081	기초생활보장	121	도로
050	교육(3)	082	취약계층지원	123	도시철도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84	보육·가족 및 여성	124	해운·항만
	052	고등교육	085	노인·청소년	125	항공·공항
	053	평생·직업교육	086	노동	126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060	문화 및 관광(5)	087	보훈	140	국토 및 지역개발(3)	
	061	문화예술	088	주택	141	수자원

062	관광	089	사회복지 일반	142	지역 및 도시
063	체육	090	보건(2)	143	산업단지
064	문화재	091	보건의료	150	과학기술(3)
065	문화 및 관광일반	093	식품의약품안전	151	기술개발
		100	농림해양수산(3)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101	농업·농촌	153	과학기술일반
		102	임업·산촌	160	예비비(1)
900	기타(행정운영경비 포함)	103	해양수산·어촌	161	예비비

출처 : 행정안전부. “202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19.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8개 목그룹, 38개 편성목, 133개 통계목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표 4-2] 지자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표(목그룹편성목통계목)

그룹	편성목	통계목
100 인건비	101 인건비	01 보수 02. 기타직 보수 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02. 공공운영비 03. 행사운영비 0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05. 공립대학 운영비
	202 여비	01. 국내여비 02. 월액여비 03. 국외업무여비 04. 국제화여비 05. 공무원 교육여비
	203업무추진비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 물건비	204 직무수행 경비	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 02. 직급보조비 03. 특정업무경비
	205 의회비	01. 의정활동비 02. 월정수당 03. 의원국내여비 04. 의원국외여비 05. 의정운영공통경비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07.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08.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09. 의원정책개발비 10. 의장협의체 부담금 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6 재료비	01. 재료비
	207 연구개발비	01. 연구용역비 02. 전산개발비 03. 시험연구비
300 경상이전	301 일반보전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03. 의용소방대지원경비 04.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05.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06. 민간인 국외여비 07. 외빈초청여비 08. 사회복지무요원 보상금 09. 행사실비 지원금 10.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1. 사회성과보상금 12. 기타 보상금

그룹	편성목	통계목
	302 이주 및 재해 보상금	01. 민간인 이주보상금 02.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03 포상금	01. 포상금 02. 성과상여금
	304 연금 부담금등	01. 연금부담금 02. 국민건강보험금 03. 의원상해부담금
	305 배상금등	01. 배상금등
	306 출연금	01. 출연금
	307 민간이전	01. 의료 및 구료비 02. 민간경상사업보조 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04. 민간행사사업보조 05. 민간위탁금 06. 보험금 07. 연금지급금 08. 이차보전금 09. 운수업계보조금 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1. 사회복지사업보조 12. 민간인위탁교육비
	308 자치단체등 이전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2. 징수교부금 03. 자치구 조정교부금 04. 시·군 조정교부금 05. 자치구 기타 자원조정비 06. 시·군 기타 자원조정비 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0. 공공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1. 기타부담금
	309 전출금	01.공사·공단경상전출금 0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10 국외이전	01. 국외경상이전 02. 국제부담금
	311 차입금 이자상환	01.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이자상환 03.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04.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05.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400 자본지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02. 감리비 03. 시설부대비 04. 행사관련 부대비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자원) 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자원) 03. 민간위탁사업비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01. 자치단체자본보조 02. 공공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404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01.공사·공단자본전출금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02. 도서구입비
	406 기타자본 이전	
	407 국외자본이전	
500 용자 및 출자	501 용자금	01. 민간용자금 02. 통화금융기관 용자금 03. 공사·공단 등 용자금 04. 사군·구 용자금
	502 출자금	
600 보전재원	601 차입금원금상환	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원금 상환 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원금 상환 03. 중앙정부 차입금원금 상환 04. 지방채증권원금 상환 05. 기타 국내차입금원금 상환 06. 차관상환 07. 기타 해외채무 상환

그룹	편성목	통계목
	602 예치금	
700 내부거래	701 기타회계 등 전출금	01. 기타회계 전출금 02.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03.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02 기금전출금	
	703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01. 법정전출금 02. 비법정전출금
	704 예탁금	
	705 예수금 원리금상환	01. 예수금원금 상환 02. 예수금이자 상환 03.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금 상환 04.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 상환
	706 기타내부거래	01. 감가상각비 02. 당기순이익 03. 적립금
800 예비비및기타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03. 내부유보금
	802 반환금기타	01. 국고보조금 반환금 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03. 기타 반환금 등 04. 잡손금

출처 : 행정안전부. “202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19.

한편, 지자체에서 지방보조금의 세출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 2 내지 제32조의10에 근거하며, 적용대상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이전재원)’, ‘운수업계보조’이다. 또한 지방보조금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정산 및 성과평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통한 이력관리, 취소 및 반환, 보조금 지원내역의 공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2. 고양시 보조금 세출결산 통계목

고양시 결산서에 의하면 보조금 세출결산은 133개 통계목 중 50개 통계목이 해당하며, 세부사업 수 기준으로 주요 통계목은 사무관리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시설비이다.

사무관리비는 물건비의 일반운영비에 해당하며,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경상이전의 일반보전금에 해당하며,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물품,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의미한다. 의료 및 구료비는 경상이전의 민간이전에 해당하며, 의료비,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은 경상이전의 민간이전에 해당하며,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경상이전의 민간이전에 해당하며,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의미한다.

시설비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문화재 발굴경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를 의미한다.

[표 4-3] 고양시 보조금 세출결산 주요 통계목 및 설정

구분	설정
201-01 사무관리비	1. 일반수용비 2. 위탁교육비 3. 운영수당 4. 피복비 5. 급량비 6. 임차료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2.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물품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예산포함)
307-01 의료 및 구료비	1. 의료비 2. 환자·수용자 및 요구대상자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경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 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의 편성기준에 따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복지 관련 사업)
401-01 시설비	1. 기본조사설계비 2.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3. 토지매입비 4. 시설비 5. 문화재 발굴경비 6.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출처 : 행정안전부. "202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019.

제2절 고양시 보조금의 통계목별 분석

1. 고양시 보조금 집행 결산 개요

최근 5년간 고양시 보조금 예산 규모는 2014년 5,793억 원(예산 총액 대비 41.8%)에서 2018년 8,388억 원(예산 총액 대비 42.2%)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6년 보조금 총액은 당해년도 예산총액의 50.0%를 차지하였다. 고양시 보조금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일반회계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 3년간 일반회계 보조금은 전체 세출예산의 50%를 상회 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 매년 10%를 상회 하였다. 다만, 2016년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은 전체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31.3%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고양시 보조금은 대부분 일반회계로서 집행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4] 연도별 고양시 세출예산과 보조금 예산(회계별)

(단위 : 억 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a)	11,692	12,852	13,705	15,337	17,432	
	보조금	예산(b)	5,566	6,862	7,226	7,956	8,081
		비율(b/a)	47.6%	53.4%	52.7%	51.9%	46.4%
특별회계	세출예산(c)	2,162	3,584	2,018	2,045	2,445	
	보조금	예산(d)	228	451	631	291	307
		비율(d/c)	10.5%	12.6%	31.3%	14.2%	12.6%
합계	세출예산 총액(e=a+c)	13,855	16,436	15,723	17,381	19,876	
	보조금 예산 총액(f=b+d)	5,793	7,313	7,857	8,247	8,388	
	비율(f/e)	41.8%	44.5%	50.0%	47.4%	42.2%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

한편 고양시 보조금 집행을 연도와 재원에 따라 분석하면, 2014년 국비, 도비 시비

는 각각 2,930억 원, 1,224억 원, 2,298억 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각각 4,534억원, 1,542억 원, 3,045억 원으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5년간 국비의 증가액이 1,604억 원으로 54.7%나 증가하였다. 그리고 총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국비비율, 도비비율, 시비비율이 각각 45.4%, 19.0%, 35.6%이었으나, 2018년에는 각각 49.7%, 16.9%, 33.4%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고양시 보조금 사업비는 매년 국비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비와 시비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연도별 고양시 보조금 사업비와 비율(재원별)

(단위 : 억 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총 사업비	6,452	7,839	8,530	8,967	9,121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국비	사업비	2,930	3,697	3,716	4,059	4,534
	비율	45.4%	47.2%	43.6%	45.3%	49.7%
도비	사업비	1,224	1,362	1,334	1,426	1,542
	비율	19.0%	17.4%	15.6%	15.9%	16.9%
시비	사업비	2,298	2,781	3,479	3,482	3,045
	비율	35.6%	35.5%	40.8%	38.8%	33.4%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

2. 고양시 보조금의 통계목별 세부사업 분석

1) 통계목별 세부사업 건수

2016년부터 2018년간 고양시 보조금 집행의 세부사업 건수는 총 3,503건이며, 50개의 통계목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다. 세부사업 건수를 통계목으로 구분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42건(12.6%)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관리비 407건(11.6%),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318건(9.1%), 민간경상사업 보조 267건(7.6%), 의료 및 구료비 243건(6.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년간 단 1회만 집행한 통계목도 기타직 보수, 민간인 국외여비, 배상금 등 다수가 있다. 다만, 원금상환, 이자상환, 전출금 등이 보조금 사업의 통계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4-6] 고양시 보조금의 통계목별 세부사업 건수와 비율

(단위 : 건, %)

No	통계목	설정	건수	비율
1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442	12.6%
2	201-01	사무관리비	407	11.6%
3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18	9.1%
4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267	7.6%
5	307-01	의료 및 구료비	243	6.9%
6	401-01	시설비	226	6.5%
7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01	5.7%
8	307-05	민간위탁금	177	5.1%
9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36	3.9%
10	301-11	기타보상금	126	3.6%
11	202-01	국내여비	116	3.3%
12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자원)	99	2.8%
13	201-02	공공운영비	93	2.7%
14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9	2.0%
15	206-01	재료비	68	1.9%
16	201-03	행사운영비	60	1.7%
17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자원)	59	1.7%
18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	1.4%
19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7	1.3%
20	308-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44	1.3%
21	301-09	행사실비보상금	43	1.2%
22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29	0.8%
23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3	0.7%
24	401-02	감리비	22	0.6%
25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22	0.6%
26	401-03	시설부대비	14	0.4%
27	101-01	보수	12	0.3%
28	207-01	연구용역비	11	0.3%
29	303-01	포상금	11	0.3%
30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9	0.3%
31	405-02	도서구입비	9	0.3%
32	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6	0.2%
33	202-04	국제화여비	5	0.1%
34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5	0.1%
35	404-0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5	0.1%
36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4	0.1%
37	207-02	전산개발비	3	0.1%
38	311-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3	0.1%
39	402-03	민간위탁사업비	3	0.1%
40	601-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3	0.1%

No	통계목	설정	건수	비율
41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	0.1%
42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	0.1%
43	311-05	기타차입금이자상환	2	0.1%
44	101-02	기타직 보수	1	0.03%
45	301-06	민간인국외여비	1	0.03%
46	305-01	배상금등	1	0.03%
47	306-01	출연금	1	0.03%
48	601-05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1	0.03%
49	702-01	기금전출금	1	0.03%
50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	0.03%
합계			3503	100.0%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아울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2) 통계목별 세부사업 금액

2016년부터 2018년간 고양시 보조금 집행의 세부사업 금액은 총 2조 3,270억 원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다. 세부사업 금액을 통계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조 3,305억 원(5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777억 원(11.9%), 시설비 1,479억 원(6.4%), 사회복지사업 보조 1,292억 원(5.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년간 시설부대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민간인국외여비, 배상금등의 통계목으로는 1억 미만의 소액 집행되었다.

[표 4-7] 고양시 보조금의 통계목별 세부사업 금액과 비율

(단위 : 억원, %)

No	통계목	설정	금액	비율
1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3,305	57.2%
2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777	11.9%
3	401-01	시설비	1,479	6.4%
4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292	5.6%
5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	737	3.2%
6	307-05	민간위탁금	567	2.4%
7	307-01	의료 및 구료비	527	2.3%
8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85	1.7%
9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364	1.6%
10	601-05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200	0.9%
11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72	0.7%

No	통계목	설정	금액	비율
12	308-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영상적 대행 사업비	170	0.7%
13	201-01	사무관리비	168	0.7%
14	301-11	기타보상금	135	0.6%
15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4	0.5%
16	601-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106	0.5%
17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2	0.4%
18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73	0.3%
19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	69	0.3%
20	702-01	기금전출금	65	0.3%
21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53	0.2%
22	401-02	감리비	45	0.2%
23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0	0.2%
24	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0	0.2%
25	101-01	보수	35	0.1%
26	306-01	출연금	29	0.1%
27	405-02	도서구입비	27	0.1%
28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25	0.1%
29	206-01	재료비	25	0.1%
30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4	0.1%
31	404-0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9	0.1%
32	201-02	공공운영비	14	0.1%
33	311-05	기타차입금이자상환	14	0.1%
34	207-01	연구용역비	14	0.1%
35	303-01	포상금	12	0.1%
36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	0.04%
37	402-03	민간위탁사업비	10	0.04%
38	201-03	행사운영비	7	0.03%
39	311-01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6	0.03%
40	101-02	기타직 보수	6	0.02%
41	202-04	국제화여비	5	0.02%
42	202-01	국내여비	4	0.02%
43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3	0.01%
44	301-09	행사실비보상금	2	0.01%
45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	0.01%
46	207-02	전산개발비	1	0.005%
47	401-03	시설부대비	0.2	0.001%
48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0.1	0.001%
49	301-06	민간인국외여비	0.1	0.0003%
50	305-01	배상금등	0.01	0.0000%
합계			23,2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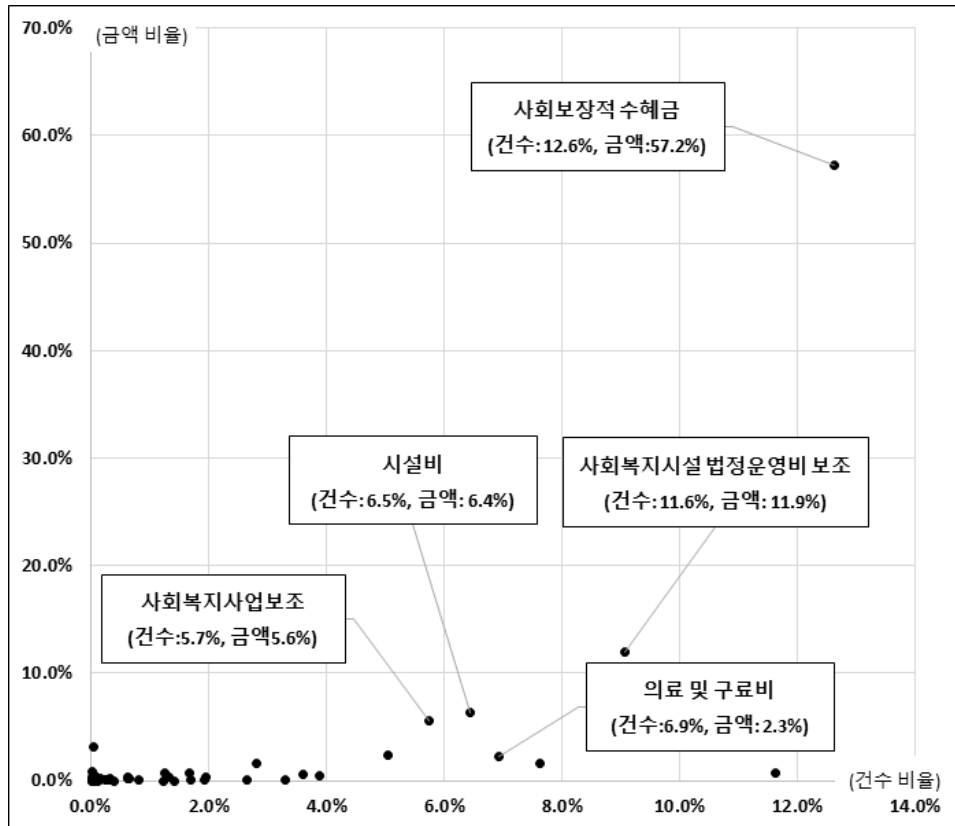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아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3) 통계목별 세부사업 수와 금액의 비율 비교

2016년부터 2018년간 고양시 보조금 집행의 세부사업에 관한 건수와 금액을 비교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시설비, 사회복지사업보조, 의료 및 구료비가 대표적인 5대 지출 통계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 고양시 보조금의 통계목별 세부사업 비율(건수와 금액)

(단위 : %)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3. 고양시의 보건복지부 보조금 집행 특성 분석

1)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의 세부사업 건수와 금액

2016년부터 2018년간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 세부사업 건수는 총 1,077건이며, 27개의 통계목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다. 세부사업 건수를 통계목으로 구분하면, 의료 및 구료비 218건(20.2%), 사회보장적 수혜금 191건(17.7%),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15건(10.7%), 사무관리비 110건(10.2%), 사회복지사업보조 79건(7.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의 통계목별 세부사업 건수(비율)

(단위 : 건, %)

No	통계목	설정	건수	비율
1	307-01	의료 및 구료비	218	20.2%
2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91	17.7%
3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15	10.7%
4	201-01	사무관리비	110	10.2%
5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79	7.3%
6	307-05	민간위탁금	71	6.6%
7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2	5.8%
8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1	3.8%
9	301-11	기타보상금	31	2.9%
10	203-03	사책추진업무추진비	28	2.6%
11	201-02	공공운영비	24	2.2%
12	401-01	시설비	16	1.5%
13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5	1.4%
14	201-03	행사운영비	13	1.2%
15	202-01	국내여비	12	1.1%
16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9	0.8%
17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9	0.8%
18	301-09	행사설비보상금	7	0.6%
19	101-01	보수	6	0.6%
20	206-01	재료비	6	0.6%
21	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	0.4%
22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4	0.4%

No	통계목	설정	건수	비율
23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2	0.2%
24	101-02	기타직보수	1	0.1%
25	305-01	배상금등	1	0.1%
26	401-02	감리비	1	0.1%
27	402-03	민간위탁사업비	1	0.1%
합계			1,077	100%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2016년부터 2018년간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 세부사업 금액은 총 1조 4, 395억 원이며, 27개의 통계목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다. 세부사업 금액을 통계목으로 구분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조 1,607억 원(80.6%)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05억 원(7.0%), 사회복지사업보조 851억 원(5.9%), 의료 및 구료비 525억 원(3.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9]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의 통계목별 세부사업 금액(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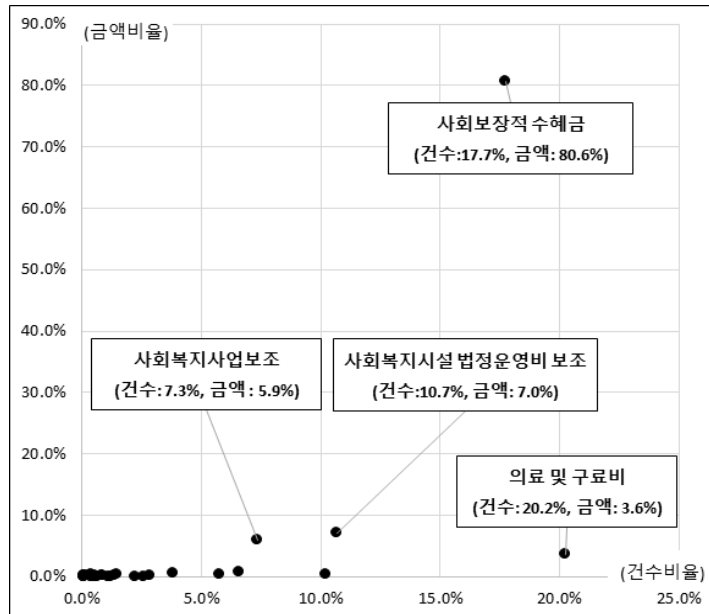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No	통계목	설정	억원	비율
1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1,607	80.6%
2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05	7.0%
3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851	5.9%
4	307-01	의료 및 구료비	525	3.6%
5	307-05	민간위탁금	103	0.7%
6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62	0.4%
7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8	0.3%
8	401-01	시설비	35	0.2%
9	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4	0.2%
10	201-01	사무관리비	33	0.2%
11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취자원)	29	0.2%
12	101-01	보수	25	0.2%
13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2	0.1%
14	402-03	민간위탁사업비	9	0.1%
15	101-02	기타직보수	6	0.04%

No	통계목	설정	억원	비율
16	301-11	기타보상금	5	0.03%
17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4	0.03%
18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4	0.03%
19	201-02	공공운영비	2	0.01%
20	206-01	재료비	1	0.01%
21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	0.01%
22	201-03	행사운영비	1	0.01%
23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	0.00%
24	202-01	국내여비	0.4	0.00%
25	301-09	행사실비보상금	0.2	0.00%
26	401-02	감리비	0.1	0.00%
27	305-01	배상금등	0.0	0.00%
합계			14,395	100%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그림 4-2]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의 통계목별 세부사업 비율(건수와 금액)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따라서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의 세부사업을 건수와 금액으로 비교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의료 및 구료비가 대표적인 지출 통계목이라고 할 수 있다.

2)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의 주요 통계목 집행 분석

(1)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 집행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016년 61건²⁵⁾, 2017년 62건, 2018년 68건으로 3년 총 191건이었다. 연도별 금액을 총사업비와 시비로 나누어 분석하면, 2016년은 총 3,458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510억 원(14.8%)이었고, 2017년은 총 3,779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581억 원(15.4%)이었으며, 2018년은 총 4,370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791억 원(18.1%)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 집행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규모와 시비 비중이 모두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연도별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고양시의 보건복지부 보조금)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사업 수(건)		61	62	68	191	
사업비	총 사업비(a)	3,458	3,779	4,370	11,607	
	시비	금액(b)	510	581	791	1,883
		비율(b/a)	14.8%	15.4%	18.1%	=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25) 2016회계연도 고양시 결산서 첨부 자료에 의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통계목은 세부사업 건수가 62건이었으나, 발달장애인성년후견인지원(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관련 사업비가 없음.

(2)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집행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 집행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2016년 34건²⁶⁾, 2017년 36건, 2018년 39건으로 3년 총 109건이었다. 연도별 금액을 총사업비와 시비로 나누어 분석하면, 2016년은 총 313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70억 원(22.3%)이었고, 2017년은 총 330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61억 원(18.7%)이었으며, 2018년은 총 362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66억 원(18.1%)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 집행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시비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연도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집행(고양시의 보건복지부 보조금)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사업 수(건)		34	36	39	109	
사업비	총 사업비(a)	313	330	362	1,005	
	시비	금액(b)	70	61	66	197
		비율(b/a)	22.3%	18.7%	18.1%	-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3)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의 사회복지사업보조 집행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 집행 중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2016년 274건, 2017년 28건, 2018년 24건으로 3년 총 79건이었다. 연도별 금액을 총사업비와 시비로 나누어 분석하면, 2016년은 총 369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105억 원(28.5%)이었고, 2017년은 총 231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70억 원(30.4%)이었으며, 2018년은 총 250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82억 원(32.8%)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 집행 중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대한 시비 비중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2016회계연도 고양시 결산서 첨부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의 통계목은 세부사업 건수가 40건이었으나, 경로당 양곡지원(담당부서 :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일산서구 가정복지과) 등 6건 관련 사업비가 없음.

[표 4-12] 연도별 사회복지사업 보조 집행(고양시의 보건복지부 보조금)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사업 수(건)		27	28	24	79	
사업비	총 사업비(a)	369	231	250	851	
	시비	금액(b)	105	70	82	258
		비율(b/a)	28.5%	30.4%	32.8%	-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아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4)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의 의료 및 구료비 집행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 집행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2016년 72건, 2017년 75건, 2018년 71건으로 3년 총 218건이었으며, 연도별 금액을 총사업비와 시비로 나누어 분석하면, 2016년은 총 165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71억 원(42.7%)이었고, 2017년은 총 175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64억 원(36.4%)이었으며, 2018년은 총 185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68억 원(36.5%)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 집행 중 의료 및 구료비는 매년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연도별 의료 및 구료비 집행(고양시의 보건복지부 보조금)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사업 수(건)		72	75	71	218
사업비(억원)	총 사업비(a)	165	175	185	525
	시비(b)	71	64	68	202
	비율(b/a)	42.7%	36.4%	36.5%	38.4%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아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4. 고양시의 경기도 보조금 집행 특성 분석

1)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의 세부사업 건수와 금액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세부사업 건수는 총 1,353건이며, 44개의 통계목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다. 세부사업 건수를 통계목으로 구분하면,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96건(1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92건(14.2%), 사무관리비 139건(10.3%), 민간경상사업 보조 125건(9.2%), 사회복지사업 보조 106건(7.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년간 단 1회만 집행한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통계목은 민간인국외여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기금전출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다.

[표 4-14] 경기도 보조금의 통계목별 세부사업 건수

(단위 : 건, %)				
No	통계목	설정	건수	비율
1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96	14.5%
2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92	14.2%
3	201-01	사무관리비	139	10.3%
4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125	9.2%
5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06	7.8%
6	401-01	시설비	97	7.2%
7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4	4.0%
8	307-05	민간위탁금	53	3.9%
9	206-01	재료비	40	3.0%
10	202-01	국내여비	35	2.6%
11	201-02	공공운영비	25	1.8%
12	301-11	기타보상금	24	1.8%
13	307-01	의료및구료비	24	1.8%
14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4	1.8%
15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	1.7%
16	201-03	행사운영비	23	1.7%
17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3	1.7%
18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20	1.5%

No	통계목	설정	건수	비율
19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6	1.2%
20	301-09	행사실비보상금	15	1.1%
21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11	0.8%
22	303-01	포상금	10	0.7%
23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	0.7%
24	301-02	장학금및학자금	9	0.7%
25	405-02	도서구입비	9	0.7%
26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7	0.5%
27	207-01	연구용역비	6	0.4%
28	202-04	국제화여비	4	0.3%
29	404-0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4	0.3%
30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	0.2%
31	302-02	민간인재해맞복구활동보상금	3	0.2%
32	311-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3	0.2%
33	401-02	감리비	3	0.2%
34	601-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3	0.2%
35	207-02	전산개발비	2	0.1%
36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	0.1%
37	311-05	기타차입금이자상환	2	0.1%
38	401-03	시설부대비	2	0.1%
39	402-03	민간위탁사업비	2	0.1%
40	301-06	민간인국외여비	1	0.1%
41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	0.1%
42	601-05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1	0.1%
43	702-01	기금전출금	1	0.1%
44	802-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	0.1%
합계			1,353	100%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아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세부사업 금액은 총 5,766억 원이며, 44개의 통계목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다. 세부사업 금액을 통계목으로 구분하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742억 원(3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1,117억 원(19.4%),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737억 원(12.8%), 사회복지사업 보조 436억 원(7.6%), 민간위탁금 338억원(5.9%), 시설비 317억 원(5.5%)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5] 경기도 보조금의 통계목별 세부사업 금액

(단위 : 건, %)

No	통계목	설정	금액	비율
1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742	30.2%
2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117	19.4%
3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	737	12.8%
4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436	7.6%
5	307-05	민간위탁금	338	5.9%
6	401-01	시설비	317	5.5%
7	601-05	기타국내차입금원금상환	200	3.5%
8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74	3.0%
9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16	2.0%
10	601-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원금상환	106	1.8%
11	201-01	사무관리비	101	1.8%
12	702-01	기금전출금	65	1.1%
13	301-11	기타보상금	45	0.8%
14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자원)	42	0.7%
15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0	0.7%
16	405-02	도서구입비	27	0.5%
17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17	0.3%
18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7	0.3%
19	311-05	기타차입금이자상환	14	0.2%
20	206-01	재료비	12	0.2%
21	303-01	포상금	12	0.2%
22	404-01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1	0.2%
23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	0.2%
24	802-02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	0.2%
25	207-01	연구용역비	9	0.2%
26	201-02	공공운영비	8	0.1%
27	311-01	시·군·구지역개발기금차입금이자상환	6	0.1%
28	403-02	공기관등에대한지본적대행사업비	6	0.1%
29	202-04	국제화여비	5	0.1%
30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4	0.1%
31	401-02	감리비	4	0.1%
32	301-02	장학금및학자금	3	0.1%
33	201-03	행사운영비	3	0.1%
34	202-01	국내여비	2	0.0%
35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	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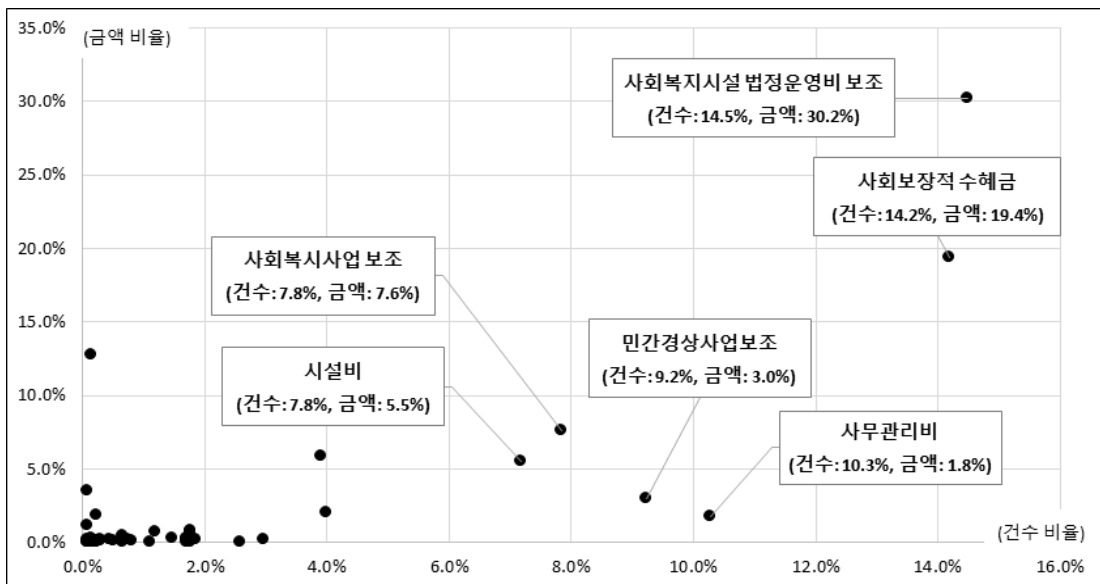
No	통계목	설정	금액	비율
36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	0.0%
37	207-02	전산개발비	1	0.0%
38	307-01	의료및구료비	1	0.0%
39	301-09	행사실비보상금	0.45	0.0%
40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0.39	0.0%
41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37	0.0%
42	301-06	민간인국외여비	0.08	0.0%
43	401-03	시설부대비	0.05	0.0%
44	402-03	민간위탁사업비	0.00	0.0%
합계			5,766	100%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따라서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의 세부사업을 건수와 금액으로 비교하면, 사회복지시설
 불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 시설비가
 대표적인 지출 통계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3]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의 통계목별 세부사업 비율(건수와 금액)

(단위 : %)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2)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의 주요 통계목 집행 분석

(1)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집행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집행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2016년 55건, 2017년 72건, 2018년 69건으로 3년 총 196건이었다. 연도별 금액을 총사업비와 시비로 나누어 분석하면, 2016년은 총 533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141억원(26.5%)이었고, 2017년은 총 573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179억 원(31.3%)이었으며, 2018년은 총 636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247억 원(38.9%)을 차지하였다.

한편,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의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누리과정 운영은 2016년 376억 원(전체 경기도 보조금 사업 총액의 70.4%), 2017년 366억 원(전체 경기도 보조금 사업 총액의 63.9%), 2018년 381억 원(전체 경기도 보조금 사업 총액의 59.9%)이었다. 반면에 2016년과 2017년 누리과정 운영에서 시비 부담은 없었고, 2018년에만 30.3억 원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누리과정 운영을 제외한 총 사업비 대비 시비의 비율은 2016년 89.5%, 2017년 86.7%, 2018년 89.0%로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의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매년 크게 증가하며 시비의 부담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4-16] 연도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집행(고양시의 경기도 보조금)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사업수(건)	55	72	69	196	
사업비(억원)	총 사업비(a)	533	573	636	1,742
	시비(b)	141	179	247	568
	비율(b/a)	26.5%	31.3%	38.9%	-
사업비2(억원) *누리과정제외	총사업비(a')	158	206	255	619
	시비(b')	141	179	227	547
	비율(b'/a')	89.5%	86.7%	89.0%	-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2)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집행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016년 59건, 2017년 56건, 2018년 77건으로 3년 총 192건이었다. 연도별 금액을 총사업비와 시비로 나누어 분석하면, 2016년은 총 274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207억원(75.4%)이었고, 2017년은 총 358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258억 원(72.1%)이었으며, 2018년은 총 485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343억 원(70.7%)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집행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매년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비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표 4-17] 연도별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사업 수(건)		59	56	77	192
사업비(억원)	총 사업비(a)	274	358	485	1,117
	시비(b)	207	258	343	808
	비율(b/a)	75.4%	72.1%	70.7%	-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아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3)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의 사회복지사업 보조 집행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집행 중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2016년 37건, 2017년 38건, 2018년 31건으로 3년 총 106건이었다. 연도별 금액을 총사업비와 시비로 나누어 분석하면, 2016년은 총 147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126억 원(85.8%)이었고, 2017년은 총 141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118억 원(83.8%)이었으며, 2018년은 총 148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123억 원(84.2%)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집행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매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4-18] 연도별 사회복지사업 보조 집행(고양시의 경기도 보조금)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사업 수(건)	37	38	31	106	
사업비(억원)	총 사업비(a)	147	141	148	436
	시비(b)	126	118	123	367
	비율(b/a)	85.8%	83.8%	83.1%	-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4)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의 민간경상사업 보조 집행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집행 중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2016년 40건, 2017년 38건, 2018년 47건으로 3년 총 125건이었으며, 연도별 금액을 총사업비와 시비로 나누어 분석하면, 2016년은 총 64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40억 원(63.1%)이었고, 2017년은 총 67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43억 원(63.6%)이었으며, 2018년은 총 67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43억 원(63.6%)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집행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매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4-19] 연도별 민간경상사업 보조 집행(고양시의 경기도 보조금)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사업 수(건)	40	38	47	125	
사업비(억원)	총 사업비(a)	64	67	67	198
	시비(b)	40	43	43	126
	비율(b/a)	63.1%	63.6%	63.6%	63.5%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5)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의 사무관리비 보조 집행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집행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2016년 43건, 2017년 42건, 2018년 54건으로 3년 총 139건이었으며, 연도별 금액을 총사업비와 시비로 나누어 분석하면, 2016년은 총 26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18억 원(70.3%)이었고, 2017년은 총 26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18억 원(69.4%)이었으며, 2018년은 총 50억 원의 사업비 중 시

비가 24억 원(48.6%)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집행 중 사무관리비는 매년 금액이 증가하지만, 시비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다.

[표 4-20] 연도별 사무관리비 보조 집행(고양시의 경기도 보조금)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사업 수(건)	43	42	54	139	
사업비(억원)	총 사업비(a)	26.2	26.2	50	103
	시비(b)	18.4	18.2	24	61
	비율(b/a)	70.3%	69.4%	48.6%	59.5%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6)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의 시설비 집행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집행 중에서 시설비는 2016년 28건, 2017년 33건, 2018년 36건으로 3년 총 97건이었다. 연도별 금액을 총사업비와 시비로 나누어 분석하면, 2016년은 총 54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29억 원(53.7%)이었고, 2017년은 총 123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99억 원(80.8%)이었으며, 2018년은 총 141억 원의 사업비 중 시비가 66억 원(46.8%)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집행 중 시설비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집행에서 직전연도에 비하여 총 사업비 증가율은 129%인데 반하여 시비 증가율은 244%에 이르고, 시비 비율도 80.0%로 매우 컸다.

[표 4-21] 연도별 시설비 집행(고양시의 경기도 보조금)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사업 수(건)	28	33	36	97	
사업비(억원)	총 사업비(a)	54	123	141	317
	시비(b)	29	99	66	194
	비율(b/a)	53.7%	80.8%	46.8%	-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5. 고양시 보조금 세부사업 집행 분석의 소결

일반회계 결산기준으로 고양시의 보조금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2017년 3년간) 일반회계 보조금은 전체 세출예산의 50%를 상회할 정도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특별회계 결산기준으로 고양시 보조금의 규모는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체 세출예산의 10%~14% 정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고양시의 연도별 보조금은 매년 국비의 비중이 증가하고 도비와 시비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양시 보조금에서 도비의 비중은 다른 재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양시 보조금의 세부사업 집행을 통계목으로 분석하면, 50개 통계목으로 집행되었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통계목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세부사업 수가 442건(전체 사업 수의 12.6%)이고 금액이 1조 3,305억원(전체 금액의 57.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3년간 세부사업 수가 1건이고 금액이 1억 미만인 소액 보조금 집행도 민간인국외여비, 배상금 등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다만, 원금상환, 이자상환, 전출금 등이 소액 보조금 세부사업으로 집행되었는데, 그것이 적절한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고양시 보조금의 통계목별 세부사업 분석은 중앙부처를 대표하는 보건복지부 보조금과 지방보조금으로서 경기도 보조금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세부사업 건수와 금액이 많은 상위 통계목에 대하여 연도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양시의 보건복지부 보조금 세부사업은 총 1,077건으로 27개 통계목으로 집행되었다. 세부사업 건수는 의료 및 구료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금액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의료 및 구료비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통계목의 연도별 추세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2]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 집행의 주요 통계목별 추세

No	통계목	연도별 추세			비고
		건수	금액	시비비중	
1	사회보장적 수혜금	증가	증가	증가	금액이 가장 많음
2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증가	증가	감소	
3	사회복지사업 보조	감소	감소	증가	
4	의료 및 구료비	유지	증가	감소	

고양시의 경기도 보조금 세부사업은 총 1,353건으로 44개 통계목으로 집행되었다. 세부사업 건수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금액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737억 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436억 원, 민간위탁금, 시설비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통계목의 연도별 추세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3]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집행의 주요 통계목별 추세

구분	통계목	연도별 추세			비고
		건수	금액	시비비중	
1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증가	증가	증가	누리과정 운영이 대부분을 차지함
2	사회보장적 수혜금	증가	증가	감소	
3	사회복지사업 보조	유지	유지	유지	
4	민간경상사업 보조	유지	유지	유지	
5	사무관리비	증가	증가	감소	2018년 사업비 급증
6	시설비	증가	증가	감소	2017년 시비의 금액 및 비율 급증

제3절 고양시 보조금의 분야 및 부문 분석

1. 고양시 보조금의 분야별 집행

1) 고양시 보조금의 분야 및 부문별 사업 건수

고양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1,984건의 보조금(일반회계기준)이 집행되었다. 사업 건수를 분야별로 분석하면, 사회복지 분야가 789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 분야 373건(18.8%), 농림해양수산 분야 363건(18.3%), 문화 및 관광 분야 109건(5.5%)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 분야는 3년 간 100건 이하, 5%이하의 보조금 사업이 집행되었다. 따라서 고양시 보조금의 사업 건수는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분야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24] 분야별 고양시 보조금 사업 건수(비율)

(단위 : 건,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010 일반공공행정	25	4.6%	29	4.1%	28	3.8%	82	4.1%
020 공공질서 및 안전	10	1.8%	12	1.7%	15	2.1%	37	1.9%
050 교육	7	1.3%	7	1.0%	7	1.0%	21	1.1%
060 문화 및 관광	30	5.5%	36	5.1%	43	5.9%	109	5.5%
070 환경	17	3.1%	30	4.2%	30	4.1%	77	3.9%
080 사회복지	236	43.1%	270	38.2%	280	38.4%	786	39.6%
090 보건	90	16.4%	141	20.0%	142	19.5%	373	18.8%
100 농림해양수산	95	17.3%	134	19.0%	134	18.4%	363	18.3%
110 산업·중소기업	11	2.0%	12	1.7%	17	2.3%	40	2.0%
120 수송 및 교통	8	1.5%	15	2.1%	6	0.8%	29	1.5%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6	2.9%	17	2.4%	23	3.2%	56	2.8%
900 기타	3	0.5%	3	0.4%	5	0.7%	11	0.6%
합계	548	100%	706	100%	730	100%	1,984	100%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이러한 분야별 보조금의 사업건수를 세분화하여 부문별로 분석하면, 보건의료 부문이 360건(18.1%)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343건(17.3%), 농업·농촌 부문 281건(14.2%), 노인·청소년 부문 172건(8.7%), 취약계층지원 부문 171건(8.6%) 순으로 많았다.

[표 4-25] 부문별 고양시 보조금 사업 건수(비율) - 순위

(단위 : 건, %)

No	부문	건수	비율	No	부문	건수	비율
1	보건의료	360	18.1%	19	에너지및자원개발	17	0.9%
2	보육·가족 및 여성	343	17.3%	20	자연	16	0.8%
3	농업·농촌	281	14.2%	21	체육	16	0.8%
4	노인·청소년	172	8.7%	22	식품의약품안전	13	0.7%
5	취약계층지원	171	8.6%	23	기타	11	0.6%
6	임업·산촌	74	3.7%	24	유아및초등교육	11	0.6%
7	기초생활보장	64	3.2%	25	평생·직업교육	10	0.5%
8	일반행정	57	2.9%	26	관광	8	0.4%
9	문화예술	52	2.6%	27	보훈	8	0.4%
10	대기	38	1.9%	28	상하수도·수질	8	0.4%
11	재난방재·민방위	35	1.8%	29	해양수산·어촌	8	0.4%
12	지역및도시	35	1.8%	30	환경보호일반	8	0.4%
13	노동	28	1.4%	31	폐기물	7	0.4%
14	문화재	28	1.4%	32	문화재및관광일반	5	0.3%
15	도로	26	1.3%	33	대중교통·물류등기타	3	0.2%
16	지방행정·재정지원	24	1.2%	34	무역및투자유치	3	0.2%
17	수자원	21	1.1%	35	경찰	2	0.1%
18	산업진흥·고도화	20	1.0%	36	입법및선거관리	1	0.1%

합계 : 1,984(100.0%)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2) 고양시 보조금의 분야 및 부문별 사업 금액

고양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총 2조 3,263억 원의 보조금(일반회계기준)이 집행되었다. 사업 금액을 분야별로 분석하면, 사회복지 분야가 18,103억 원(77.8%)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 분야 968억 원(4.2%), 일반공공행정 분야 865억 원(3.7%)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 분야는 3년 간 800억 원 이하, 3%이하의 보조금 사업이 집행되었다. 따라서 고양시 보조금의 사업 금액은 사회복지, 보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절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26] 분야별 고양시 보조금 사업 금액(비율)

(단위 : 억원, 건,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010 일반공공행정	390	5.4%	436	5.5%	38	0.5%	865	3.7%
020 공공질서 및 안전	127	1.8%	171	2.2%	183	2.3%	481	2.1%
050 교육	87	1.2%	54	0.7%	45	0.6%	186	0.8%
060 문화 및 관광	128	1.8%	158	2.0%	125	1.6%	412	1.8%
070 환경	57	0.8%	118	1.5%	160	2.0%	335	1.4%
080 사회복지	5,510	76.3%	5,818	73.1%	6,775	83.8%	18,103	77.8%
090 보건	301	4.2%	340	4.3%	328	4.1%	968	4.2%
100 농림해양수산	132	1.8%	145	1.8%	181	2.2%	458	2.0%
110 산업·중소기업	206	2.9%	322	4.1%	43	0.5%	572	2.5%
120 수송 및 교통	205	2.8%	259	3.3%	50	0.6%	513	2.2%
140 국토 및 지역개발	72	1.0%	123	1.5%	136	1.7%	330	1.4%
900 기타	12	0.2%	12	0.1%	17	0.2%	40	0.2%
합계	7226	100%	7956	100%	8081	100%	23,263	100%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이러한 분야별 보조금의 사업 금액을 세분화하여 부문별로 분석하면, 노인·청소년 부문이 6,241억 원(26.8%)으로 가장 많고, 기초생활보장 부문 2,183억 원(9.4%), 취약계층지원 부문 1,375억 원(5.9%) 순으로 많았다.

[표 4-27] 부문별 고양시 보조금 사업 금액(비율)- 순위

(단위 : 억원, 건, %)

No	부문	금액	비율	No	부문	금액	비율
1	보육·가족 및 여성	7,382	31.7%	19	체육	103	0.4%
2	노인·청소년	6,241	26.8%	20	문화재	93	0.4%
3	기초생활보장	2,183	9.4%	21	지역맞도시	79	0.3%
4	취약계층지원	1,375	5.9%	22	임업·산촌	60	0.3%
5	보건의료	968	4.2%	23	에너지 및 자원개발	60	0.3%
6	지방행정·재정지원	901	3.9%	24	보훈	60	0.3%
7	평생·직업교육	783	3.4%	25	기타	40	0.2%
8	도로	513	2.2%	26	경찰	24	0.1%
9	농업·농촌	391	1.7%	27	해양수산·어촌	21	0.1%
10	무역및투자유치	336	1.4%	28	폐기물	16	0.1%
11	재난방재·민방위	299	1.3%	29	관광	13	0.1%
12	대기	282	1.2%	30	문화재 및 관광일반	12	0.1%
13	문화예술	235	1.0%	31	자연	11	0.0%
14	수자원	190	0.8%	32	환경보호일반	8	0.0%
15	산업진흥·고도화	176	0.8%	33	상하수도·수질	5	0.0%
16	유아및초등교육	174	0.7%	34	식품의약안전	1	0.0%
17	일반행정	121	0.5%	35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0	0.0%
18	노동	106	0.5%				
합계 : 23,262(100.0%)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아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2. 고양시 주요 분야의 보조금 집행

1) 고양시 보조금의 사회복지 분야 집행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고양시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일반회계기준)의 집행을 사업 건수 기준으로 분석하면,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사업이 343건(43.6%)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청소년 부문 사업 172건(21.9%), 취약계층지원 부문 사업 171건(21.8%) 순으로 많았다. 따라서 고양시 보조금의 사회복지 분야의 부문별 사업 건수는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취약계층지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28] 고양시 보조금의 사회복지 분야 사업 건수

(단위 : 건, %)

부문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기초생활보장	24	10.2%	20	7.4%	20	7.1%	64	8.1%
노동	9	3.8%	10	3.7%	9	3.2%	28	3.6%
노인·청소년	51	21.6%	58	21.5%	63	22.5%	172	21.9%
보육·가족 및 여성	101	42.8%	121	44.8%	121	43.2%	343	43.6%
보훈	3	1.3%	3	1.1%	2	0.7%	8	1.0%
취약계층지원	48	20.3%	58	21.5%	65	23.2%	171	21.8%
합계	236	100%	270	100%	280	100%	786	100%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아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이러한 사회복지 분야 보조금을 사업 금액으로 분석하면,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사업이 7,382억 원(40.8%)로 가장 많았고, 노인·청소년 부문 사업이 6,242억 원(34.5%), 취약계층지원 부문 사업이 2,130억 원(11.8%) 순으로 많았다. 따라서 고양시 보조금의 사회복지 분야의 부문별 사업 금액은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취약계층지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29] 고양시 보조금의 사회복지 분야 사업 금액

(단위 : 억원, 건, %)

부문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기초생활보장	666	12.1%	730	12.5%	787	11.6%	2,183	12.1%
노동	47	0.9%	28	0.5%	31	0.5%	106	0.6%
노인·청소년	1,842	33.4%	2,016	34.7%	2,384	35.2%	6,242	34.5%
보육·가족 및 여성	2,295	41.7%	2,334	40.1%	2,753	40.6%	7,382	40.8%
보훈	5	0.1%	9	0.2%	45	0.7%	59	0.3%
취약계층지원	654	11.9%	701	12.0%	775	11.4%	2,130	11.8%
합계	5,510	100%	5,818	100%	6,775	100%	18,103	100%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아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2) 고양시 보조금의 보건 분야 집행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고양시 보건 분야 보조금(일반회계기준)의 집행을 사업 건수와 금액 기준으로 분석하면, 보건의료 부문이 360건(96.5%)과 968억 원(100%)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4-30] 고양시 보조금의 보건 분야 사업 건수

(단위 : 건, %)

부문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보건의료	86	95.6%	138	97.9%	136	95.8%	360	96.5%
식품의약품안전	4	4.4%	3	2.1%	6	4.2%	13	3.5%
합계	90	100%	141	100%	142	100%	373	100%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표 4-31] 고양시 보조금의 보건 분야 사업 금액

(단위 : 건, %)

부문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보건의료	300	99.9%	340	100%	328	100%	968	100%
식품의약품안전	0	0.1%	0	0.0%	0.1	0.0%	0	0.0%
합계	301	100%	340	100%	328	100%	969	100%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3) 고양시 보조금의 농림해양수산 분야 집행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고양시 농림해양수산 분야 보조금(일반회계기준)의 집행을 사업 건수 기준으로 분석하면, 농업·농촌 부문 사업이 281건(77.4%)으로 가장 많았고, 임업·산촌 부문 사업이 74건(20.4%)이고, 해양수산·어촌 부문 사업이 8건(2.2%)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양시 보조금의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부문별 집행은 농업·농촌 부문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32] 고양시 보조금의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 건수

(단위 : 건, %)

부문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농업·농촌	76	80.0%	99	73.9%	106	79.1%	281	77.4%
임업·산촌	14	14.7%	33	24.6%	27	20.1%	74	20.4%
해양수산·어촌	5	5.3%	2	1.5%	1	0.7%	8	2.2%
합계	95	100%	134	100%	134	100%	363	100%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이러한 사농림해양수산 분야 보조금을 사업 금액으로 분석하면, 농업·농촌 부문 사업이 391억 원(85.4%)으로 가장 많았고, 임업·산촌 부문 사업이 61억 원(13.3%)이고, 해양수산·어촌 부문이 6억 원(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3] 고양시 보조금의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 금액

(단위 : 억원, %)

부문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농업·농촌	109	82.9%	121	83.2%	161	89.0%	391	85.4%
임업·산촌	19	14.4%	24	16.5%	18	9.9%	61	13.3%
해양수산·어촌	4	2.7%	0	0.3%	2	1.1%	6	1.3%
합계	132	100%	145	100%	181	100%	458	100%

출처 : 고양시. "각 연도 결산서 보조금 집행내역(이월금 미포함)", 각 연도(2016~2018년).

3. 고양시 보조금 세부사업의 분류 검토

고양시 보조금의 일부 사업에서 내용과 분야 및 부문 분류가 서로 불일치한 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보조금 사업의 분류에 대한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 보조금 중 지방세수 증대 지원 사업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집행하고 분야와 부문이 수송 및 교통-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로 분류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여성가족부 보조금 중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사업의 경우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서 집행하고 분야와 부문이 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회복지-노인·청소년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분류 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예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34] 고양시 보조금 세부사업 분류 검토(예시)

No	세부사업명(부처)	조직-분야-부분
1	지방세수 증대 지원 (경기도)	고양시 분류 : 차량등록사업소-수송및교통-대중교통·물류등기타 개선 의견 : 차량등록사업소-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2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경기도)	고양시 분류 : 토지정보과-국토 및 지역개발-지역및도시 개선 의견 : 토지정보과-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3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사업(경기도)	고양시 분류 :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보건-보건의료 개선 의견 : 환경친화사업소-공공질서 및 안전-경찰
4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여가부)	고양시 분류 :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 개선 의견 :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사회복지-노인·청소년
5	지방하천수해복구 (경기도)	고양시 분류 : 환경친화사업소생태하천과-국토및지역개발-수자원 개선 의견 : 환경친화사업소-공공질서및안전-재난방재·민방위
6	도서관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 (경기도)	고양시 분류 : 도서관센터일산서구도서관과-문화및관광-문화재및관광일반 개선 의견 : 도서관센터일산서구도서관과-교육-평생·직업교육
7	마케팅등지역특성화산업육성 (산업부)	고양시 분류 : 마이스산업과-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개선 의견 : 마이스산업과-산업·중소기업-산업진흥·고도화

제 5 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제절 연구결과 요약

1. 고양시 국고보조사업과 보조금 집행 현황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고양시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절대 다수가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이며, 절반이상이 사업규모 1억원을 넘지 않는 소액 사업이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이 소액사업이 많았다. 고양시 국고보조금 중 가장 규모 큰 국고보조금인 보건복지부 사업은 연도별 증가율이 사업 건수 보다 금액이 더 컸으며, 시비 매칭율은 매년 28%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 사업은 대부분 기초연금 지급,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이며, 매년 각각 30%, 25%, 25%의 시비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주요 부처의 사업 당 시비 매칭율은 환경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높은 편이고,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한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고양시 보조금(일반회계 기준) 집행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 건수와 금액 측면에서 보건복지부가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국비, 도비, 시비의 사업비 비율이 각각 70.7%, 10.6%, 18.6% 수준이었으나, 실제 집행률은 국비와 도비에 비하여 시비가 낮았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고양시 보조금(일반회계 기준) 집행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야별 사업 건수는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순이고, 분야별 금액은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산업·중소기업 순이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기도 보조금의 재원별 비율은 도비, 시비가 각각 43.0%, 57.0%이지만, 대체적으로 도비의 비율은 감소하고 시비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 중 핵심사업은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생계급여,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이며, 이러한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는 본청 아동청소년과, 구청 가정복지과와 시민복지과, 보건소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업별 집행

률은 약 99%를 상회할 만큼 높았지만, 일부 부서의 집행률은 그렇지 못하였다. 아울러 같은 보조금사업도 부서에 따라 집행률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소액 사업비를 지출하는 부서에서 집행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2. 고양시 보조금의 집행 특성분석 결과

최근 5년간 고양시 보조금 예산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일반회계로 집행되고 있다. 그리고 고양시 보조금 사업비를 재원으로 분석하면, 국비, 도비 시비가 각각 전체 사업비의 약 50%, 약 33%, 약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비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에 도비와 시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3년(2016년~2018년)간 고양시 보조금(일반회계 기준)의 세부사업을 통계목으로 분석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시설비, 사회복지사업보조, 의료 및 구료비가 대표적인 5대 지출 통계목이라고 할 수 있다.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의 세부사업을 건수와 금액으로 비교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의료 및 구료비가 대표적인 지출 통계목이라고 할 수 있다.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 집행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규모와 시비 비중이 모두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시비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양시 보건복지부 보조금 집행 중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대한 시비 비중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매년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시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의 세부사업을 건수와 금액으로 비교하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 시설비가 대표적인 5대 지출 통계목이라고 할 수 있다.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집행 중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매년 크게 증가하며 시비의 부담률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매년 금액이 증가하고 시비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집행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매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무관리비는 매년 금액이 증가하고 시비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양시 경기도 보조금 집행 중 시설비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양시 보조금의 분야 및 부문별 분석 결과

최근 3년(2016년~2018년)간 고양시 보조금(일반회계 기준)을 분야별로 분석하면, 사업 건수 기준으로 사회복지 분야, 보건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금액기준으로 사회복지 분야, 보건 분야,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양시 보조금을 부문별로 분석하면, 사업 건수기준으로 보건의료 부문,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농업·농촌 부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금액 기준으로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노인·청소년 부문, 기초생활보장 부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양시 보조금 사업의 내용과 분야 및 부문의 분류가 서로 불일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조금 사업의 분야 및 부문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2절 정책 제언

중앙정부와 광역정부로부터 이전하는 보조금은 부족한 고양시의 재정을 채워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보조금으로 인하여 재정운영의 경직성 발생하고 재정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나아가 독립적 재정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부정적 견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최근 다양한 국가사업과 광역사업이 보조금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조금들은 그 동안 대부분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차원에서 보조율 조정, 보조사업 관리 및 운용, 보조금 부정수령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고양시 입장에서 보조금은 재정적 지원을 받는 혜택인 동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양시는 보조금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재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고양시의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내역에 관하여 상세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양시의 보조금은 소수의 부처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사한 특정 업무로 많이 집행하였다. 그리고 보조금의 수와 금액이 많은 3개 부처를 대상으로 세부사업의 집행내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더니,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등에 많이 지출되었다.

향후 고양시가 보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보조금의 효율화를 위하여 보조금 사업건수와 금액에서 중요도가 높은 지출내역에 대하여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유사 또는 중복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통합을 건의해야 한다. 셋째, 보조금 사업에서 고양시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보조금 관리의 오류를 수정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참고문헌

인용문헌

- 고양시(2017).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 보조금 집행현황』, 고양시.
- 고양시(2018).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 보조금 집행현황』, 고양시.
- 고양시(2019). 『2018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 보조금 집행현황』, 고양시.
- 권오성(2006). “국고보조금 제도의 보조를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기획재정부(2016). 『국고보조사업 업무매뉴얼』,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2018).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통합과정(정산포함) 매뉴얼』,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2019). 『2019년 국고보조사업 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김범식·배준식(2015).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산정방식 개선』, 서울연구원.
- 김상철·김대철(2010). “참여정부 이후 지방복지재정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6).
- 김영록(2016). “국고보조사업의 사전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 적격성심사 제도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22(3).
- 김재훈(2003). “국고보조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비교정책적 분석”. 『한국지방재정논집』, 8(2) : 25-48.
- 김정훈(2013).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의 발전방안”, 『예산춘추』, 가을 32 : 62-66.
- 김정훈·공동성(2013).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재정포럼』, 제203호
- 김충묵·강민규(2009).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43(2).
- 김홍환(2018).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체계 개편방안 연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 리희문(2019). “경기도 도비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보조율제도 개선방안”, 경기도의회.
- 류민정(2018). 『내부통제 관점에서의 국고보조사업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연구』, 감사연구원.

- 오윤수·홍수완(2015). 『국고보조사업의 관리위험과 관리통제 개선방안 연구』, 감사원·감사연구원.
- 유영성·이원희(2015). “국고보조금 운영의 개선방안 : 광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이상윤(2016). 『국고보조사업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이창균(2001). “국고보조금의 보조율과 지방비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6(2).
- 임성일(2012). “국고보조금의 과제와 개선방향”, 『지방재정』, 2012년 4월호.
- 장덕희(2009). “국고보조금의 이월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2).
- 정성호·김원희(2015). 『정부기능분류(COFOG)의 체계적 고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정창훈(2016).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업무 실무 매뉴얼 개발』, 행정자치부.
- 조계근(2014).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개선방안, 강원도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강원발전연구원.
- 조임곤(2009). “국고보조금 기준보조를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연구』, 12(2).
- 주민수(2000).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에 입각한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 『경제연구』, 21(2).
- 최병호·정종필(2007).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제도에 있어서 Fungibility 가설에 관한 실증적 분석”, 『재정논집』, 13(2).
- 한국조세연구원(2008).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2015).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행정안전부(2018).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행정안전부.
- 홍인기(2013).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National Subsidies in Goyang City

Jonghyok Park*, Jisung Park*

In general, subsidies are an important policy instrument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transfer funds to local governments and are an important issue in the area of local finance. In particular, the emphasis on decentralization and financial decentralization is increasing the need for research on subsidies.

Most of the research in the past have been conducted on the adjustment of subsidy rates,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ubsidies, and illegal receipts of subsidies. However, for local governments, subsidies are both financially beneficial but undermine financial independence at the same time.

Therefore, Goyang City needs to clearly recognize the characteristics of subsidies and to secure financial independence. For this purpose, a detailed analysis has been conducted on the details of subsidies implementation in Goyang City for the past three year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subsidies in Goyang City were concentrated in a small number of ministries and were carried out in similar specific tasks. In-depth analysis of the execution of detailed projects was conducted on three ministries with highest subsidies and amounts. It was found that they spent a lot on subsidies, mandatory operating cost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social

* Goyang Research Institute, Goyang, Korea

welfare projects.

Goyang City proposed the following measures to efficiently manage the subsidy project: First, in order to make subsidies more efficient, it is necessary to focus on a small number of projects and a small number of expenses; second, it is proposed that similar or overlapping subsidies projects should be integrated; third, in the subsidy project, a method should be prepared to minimize the financial burden on Goyang City; fourth, it is necessary to correct and maintain consistency in the subsidy management.